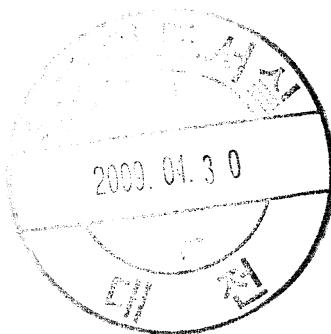


310.111
등147

가계동향조사지침서

2009



B6well



가계동향조사지침서

차례

I. 조사개요

1. 조사목적	7
2. 조사연혁	7
3. 표본설계	8
4. 법적근거	10
5. 조사방법 및 조사항목	10
6. 조사일정	10

II. 조사대상

1. 조사대상가구	15
2. 조사제외가구	16
3. 조사대상 가구원	20
4. 조사제외 가구원	21

III. 조사공무원 담당업무

1. 조사일정에 따른 업무	25
2. 가계부 배부시 유의사항	26
3. 가계부 기입지도	26
4. 가계부 회수시 유의사항	27

IV. 가계부 기입방법

1. 표지란	31
가. 조사년월	32
나. 조사구번호	32
다. 구역 및 거처번호	32
라. 가구번호	32
마. 지방청, 사무(출장)소명 및 담당자	32
2. 가구실태란	36
가. 가구원 사항	36
나. 따로 살고 있는 배우자와 미혼자녀	53
다. 무직가구의 주된 수입원	55
라. 거처구분	58
마. 자동차 보유	60
바. 주거에 관한 사항	61
3. 은행자동이체 항목	70
4. 수입과 지출란	72
가. 조사항목별 기입방법	72
나. 가계수지 유형별 기입방법	73
1) 현금수입의 경우	73
2) 현금지출의 경우	82
3) 현물소득의 경우	85
4) 신용카드나 외상지출의 경우	90
5) 선물의 경우	92
6) 사글세 보증금을 지불한 경우	95
5. 조사대상가구에 드리는 글(조사직원기입)	96
6. 조사대상가구에서 주시는 글(응답자기입)	96

V. 조사표류 내용검토 요령

1. 일반적인 사항	99
2. 가계부	99

VI. 부록

1. 통계법(발췌)	105
2. 가계동향조사가 언급된 법령	107

part

01

조사개요

1. 조사목적
2. 조사연혁
3. 표본설계
4. 법적근거
5. 조사방법 및 조사항목
6. 조사일정



01 조사목적

가구에 대한 가계수지 실태를 파악하여 국민의 소득과 소비 수준변화의 측정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 소비자 물가지수 작성에 필요한 가중치 기초 자료 제공
- 소득분배 수준측정 및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 국민소득 추계 등 경제·사회통계 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이주대책비 산정, 영세민 구호사업, 근로자 임금기준의 결정 등의 기준 제공

02 조사연혁

- 1942년 일제말기 처음시작
- 1951년 한국은행에서 부산 60가구 대상 조사실시
- 1954년 서울 근로자 200가구 유의표본 조사
- 1960년 임의표본으로 전면개편 조사
- 1963년 통계청으로 이관하여 5대 비목별 품목 분류방식(식료품비, 주거비, 광열비, 피복비, 잡비)에 의한 30개 도시를 대상(조사가구 1,700개)으로 조사 실시
- 1969년 다목적 표본 설계(경제활동인구조사 및 인구동태표본조사에도 사용)를 적용하여 조사실시(대상 조사가구 1,800개)
- 1972년 다목적 표본 1차 개편
- 1975년 전 비목에 대한 가계부 기장방식을 채택(이전에는 식료품비만 가계부 기장방식이며 나머지 비목은 분기별로 면접조사)

- 1977년 다목적 표본 2차 개편(조사가구 4,000개로 확대)
- 1982년 가계소비 지출을 5대비목에서 9대비목(식료품, 주거, 광열수도, 가구, 피복, 보건, 교육교양오락, 교통, 기타)으로 개편
- 1983년 다목적 표본 3차 개편(조사가구 4,400개)
- 1988년 다목적 표본 4차 개편, 전국 62개 도시(조사가구 4,500개)를 대상
- 1993년 다목적 표본 5차 개편(조사가구 5,500개)
- 1995년 가계소비 지출을 9대 비목에서 10대 비목(교육·교양오락비를 교육과 교양오락비로 분리)으로 확대
- 1998년 다목적 표본 6차 개편(조사가구 5,500개)
- 2003년 다목적 표본 7차 개편(조사가구 7,500개)
 - 도시가계조사에서 전국가계조사로 확대
- 2005년 다목적 연동표본방식 도입, 1인가구 조사
- 2007년 다목적 연동표본 8차 개편

03 표본설계(표본관리과 담당)

가. 모집단

-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아파트 조사구와 보통조사구내 가구 및 가구원을 조사모집단(survey population)으로 설정
-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구에 신축아파트조사구(2005. 11. 1~2006. 10. 31)를 추가하여 최종적으로 27,011개 조사구를 표본틀(sampling frame)로 사용

나. 층화 및 표본규모

- 7대 도시(특별시와 광역시)와 9개 도(道)로 우선 층화하고, 각 도에서는 동부와 읍면부로 다시 층화하여, 전국을 25개로 층화한 후, 999개를 표본조사구로 선정(1조사구당 평균 10가구)로 약 8,700 적격가구

다. 표본조사구 추출

- 기초자료의 집계
 -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조사구 중 보통조사구(1)와 아파트조사구(A)를 추출단위 조사구로 하여, 추출단위 조사구별로 모집단 특성에 대해 기초 자료 집계
- 특성항목의 선정
 - 추출된 표본과 모집단의 구조를 비교하기 위해 특성항목 사용
 - 실업자수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의한 항목과 취업자의 구성요소를 파악할 수 있는 항목 24개를 선정

| 모집단 특성항목 |

분류	특성항목
주택사항 (4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유형(소형아파트, 대형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가구사항 (5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어가(비농림어가, 농림어가)- 주택점유 형태(자가, 전세, 월세)
인구사항 (9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별(남자, 여자)- 15세 이상 연령그룹별(15-19세, 20-29세, 30-59세, 60세이상)- 교육정도(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경활사항 (6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활상태(취업자, 실업자, 비경인구)- 산업별 취업자(농림어업, 광공업, 서비스업)

- 표본조사구 명부 작성
 - 어떤 특성에 치우친 표본이 추출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각 지역별 분류 기준에 따라 조사구 명부 정렬
- 표본조사구 추출
 - 각 층별 표본규모만큼 확률비례추출방법에 의해 표본조사구 추출

04 법적근거

-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지정통계 제10106호

05 조사방법 및 조사항목

가. 조사방법

- 가구실태 관련항목 : 조사원 면접방식
- 가구의 수입 및 지출 관련항목 : 응답자 종이 및 전자기계부 기입방식
 - 매월 조사 개시 전에 조사표(기계부)를 조사대상가구에 배부하여 가구에서 매일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금액과 품목명을 직접 종이기계부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입하는 방식으로 실시

나. 조사항목

- 원칙적으로는 목적별 분류방식을 적용
 - '목적'의 의미는 개개인의 목적이 아닌 일반적인 목적
 - 상품 및 서비스의 용도별 분류방식도 부분적으로 도입

06 조사일정

분 류	특 성 항 목
전월 28일 ~ 말일	- 가계동향조사 가구관리 및 가계부 배부
금월 1일 ~ 10일	- 표본대상가구 변동처리 (표본관리과)
금월 1일 ~ 말일	- 가계동향조사 기입지도 및 점검
익월 1일 ~ 3일	- 가계부 회수
익월 4일 ~ 18일	- 내검 · 부호기입 · 자료입력 및 제출
익월 19일 ~ 분기별	- 자료집계 · 결과분석 및 공표 (사회복지통계과)

| 수입 및 지출항목 |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품 목
소득(26)	경상소득(22)	근로소득(6)	가구주, 배우자, 기타가구원
		사업소득(5)	가구주, 배우자, 기타가구원, 주택 등 임대소득, 의제자 가주거소득
		재산소득(4)	이자소득, 배당소득, 의제이자소득, 기타재산소득
		이전(7)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사회수혜금, 세금환급금, 가구간이전, 할인혜택, 기타이전소득
	비경상소득(3)		경조소득, 퇴직금 및 연금일시금, 기타비경상소득
	사회적현물이전(1)		사회적현물이전
기타 수입(11)	자산변동으로 인한 수입		저축 및 보험탄 금액,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계탄 금액, 보증금 회수, 유가증권 매각, 부동산 매각, 기타 자산변동으로 인한 수입
	부채증가로 인한 수입		부동산관련 빌린 돈, 월부 및 외상, 기타빌린 돈
	자산이전		자산이전수입
가계 지출 (418)	소비지출(394)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129)	곡물, 곡물가공품, 빵 및 떡류, 육류, 육류가공품, 신선 수산동물, 염건수산동물, 기타수산동물가공, 유제품 및 알, 유지류, 과일 및 과일가공품, 채소 및 채소가공품, 해조 및 해조가공품, 당류 및 과자류, 조미식품, 기타 식품, 커피 및 차, 쥬스 및 기타음료
		주류 및 담배(8)	주류, 담배
		의류 및 신발(29)	직물 및 외의, 내의, 의복관련서비스, 신발, 신발서비스
		주거 및 수도광열(22)	실제주거비, 의제주거비, 주택유지 및 수선, 상하수도 및 기타주거서비스, 연료비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53)	가구 및 조명, 실내장식, 가구·조명 및 장식서비스, 가정용 섬유제품, 가전 및 가정용기기, 가전관련서비스, 가사용품, 가정용공구 및 기타, 가사소모품, 가사서비스
		보건(13)	의약품, 기타 의약품, 보건의료용품 및 기구, 보건의료 서비스, 치과서비스, 기타의료서비스, 입원서비스
		교통(23)	자동차구입, 기타운송기구구입, 운송기구유지 및 수리, 운송기구, 연료비, 기타개인교통서비스, 철도운송, 육상 운송, 기타운송, 기타교통관련서비스
		통신(7)	우편서비스, 통신장비, 통신서비스
		오락·문화(44)	영상음향기기, 정보처리장치, 오락문화 내구재, 장난감 및 취미용품, 화훼관련용품, 운동 및 오락서비스, 문화 서비스, 서적, 기타인쇄물, 문구, 단체여행비
		교육(24)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학원 및 보습교육, 성인학원교육, 기타교육
		음식·숙박(8)	식사비, 숙박비
		기타 상품 및 서비스(32)	이미용서비스, 이미용 기기, 위생 및 이미용용품, 시계 및 장신구, 기타개인용품, 사회복지, 보험, 기타금융, 기타서비스
	비소비지출(24)		경상조세, 비경상조세, 연금, 사회보장, 이자 및 부담금, 가구간 이전, 비영리단체로 이전
기타 지출(11)			자산변동으로 인한 지출, 부채감소를 위한 지출, 자산 이전

part

02

조사 대상

1. 조사대상가구
2. 조사제외가구
3. 조사대상 가구원
4. 조사제외 가구원



조사대상

01 조사대상가구(家口, household)

가구의 정의

-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 단위

구별개념

- 주민등록상 세대 : 주민등록상 세대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법적인 개념이므로 실제 살고 있는 사람과 다르게 등록될 수 있기 때문에 가구의 개념과 다름
- 가족 : 가족은 혈연, 혼인, 입양 등으로 한 집안을 이룬 사람들의 집단인 반면 가구는 혈연여부와 상관없이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단위

가구구분 지침

- 부모, 자녀, 친척 등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는 1가구로 조사
- 친척이 같은 집에서 살고 있으나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별개의 가구로 조사
- 고용가구와 함께 생활하는 1인의 가사사용인 또는 영업상사용인은 주인가구에 포함하여 1가구로 조사
-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사는 가구는 한국인을 가구주로 하여 1가구로 조사

조사대상 가구

- 전국 동읍면에 거주하는 가구(1인가구 포함)
- 가계수지 파악이 가능한 가구

참고사항

- 가사사용인 : 고용주 및 그 가족과 함께 먹고 자며 주로 가사에 종사하는 사람 ex) 가정부 등
- 영업상 사용인 : 고용주 및 그 가족과 함께 먹고 자면서 주로 영업에 고용된 사람 ex) 점원, 배달원 등

02 조사제외가구

가. 농가·임가·어가

- 가구가 농가·임가·어가의 경우는 제외
 - 생산 활동과 지출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져 소득과 가계소비지출을 명확히 구분하기 곤란하기 때문
 - 농가경제조사에서 사업비, 소비지출, 판매량 등을 고려하여 조사
- 가구원 중 1인이 농·임·어업의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도 제외

농 가

- 생계, 영리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
 - ① 경지를 10a(약 300평) 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
 - 자기소유의 경지에 농사를 짓는 경우
 - 남의 소유 경지를 빌려서 농사를 짓는 경우
 - 경지로부터의 수확물을 처분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는 경우
 - └ 남에게 비료, 종자를 보조하여 주고 농사를 짓게 한 경우
 - └ 영농조합·법인 등에 모내기, 수확 등을 위탁한 경우
 - ② 연간 농·축산물의 판매금액이 50만원 이상으로 농업을 계속하는 가구(단, 판매금액이 50만원 미만이라도 조사기준시점 현재 50만원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는 포함)

* 농 가
예외가구

- 자기 소유의 경지 전부를 남에게 빌려준 경우
- 남의 농사에 임금을 받고 고용된 가구원 밖에 없는 경우

임 가

- 생계, 영리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다음의 중 한 가지에 해당
 - ① 3ha 이상 산림을 보유하고 작년 1년간 산림사업 실적이 있는 가구
 - ② 최근 1년간 벌목 실적이 있는 가구
 - ③ 연간 임산물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가구
 - ④ 연간 임업 종사일수가 90일 이상인 가구
 - ⑤ 관상수업자에 등록한 가구
- 유실수를 일정 규모 이상 재배하는 가구
 - ⑥ 밤 1,700평 ⑦ 대추 300평 ⑧ 호도 800평 ⑨ 잣 7,000평
- 야생조수를 사육하는 가구
 - ⑩ 대동물(호랑이, 곰, 사자, 표범 등) 1마리
 - ⑪ 중동물(멧돼지, 오소리, 여우, 타조 등) 3마리
 - ⑫ 소동물(멧토끼, 꿩, 월양, 기러기 등) 20마리 이상

어 가

- 판매를 목적으로 지난 1년중 1개월 이상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 활동을 하였으며, 가구관리시점 현재 어업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
 - ① 반드시 “판매를 목적”으로 어업활동이나 경영을 하여야 함
 - ② 지난 1년중 “1개월 이상 어업활동”을 한 1명 이상의 가구원이 있어야 함
 - ③ 현재 어업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이어야 함(단, 아래의 어가포함)
 - └ 비어기, 금어기 등 일시적으로 어업을 중단하고 있는 가구
 - └ 어선이나 양식장을 빌려서 경영하는 가구
 - └ 남의 어선이지만 승선하여 자기 어업활동을 한 후 자기 뜻으로 분배받은 어획물에 판매권한이 있는 가구

※ 어 가 예외가구

- 자가소비나 오락을 목적으로 어업활동을 하는 가구
- 가구원 2명이상을 합산해야 어업활동이 1개월이상인 경우
- 어선이나 양식장을 빌려주고 임대료만 받는 가구
- 노동력만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어업종사자가구

농어가구구분사례

□ 농가

- 농가의 경우에 부적격가구의 여러 가지 기준 중 어느 한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 경지면적이 논밭 300평 미만인 경우에는 지난 1년간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50만원 이상이거나, 판매금액이 50만원 미만이라도 가구관리시점 현재 50만원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는 농가로 간주하여 부적격가구로 봄
- 겸업농가의 취급방법은?
 -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농업이외의 다른 사업을 하고 그 수익이 농업소득보다 월등히 많다고 하더라도 농가의 정의 중 어느 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가로 간주하여 부적격가구로 봄
- 농업 임금근로자의 경우는?
 - 농가 및 농업회사 등에 채용되어 임금을 받고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는 임금근로자로서 적격가구임
- 농지를 빌려서 농업을 경영하는 가구는?
 - 토지 등을 빌려서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농가정의에 해당하면 농가로 간주하여 부적격가구임
- 가구주 이외의 가구원이 농업을 경영하는 경우는?
 - 가구주 이외의 가구원이 농가요건의 규모로 농업을 경영할 때 역시 농가로 간주하여 부적격가구임

□ 어가

- 어가의 경우 고기 잡는 배만 임차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 어선 또는 어구를 빌려서 수산물을 채취·포획하여 얻은 소득으로 생활하는 가구는 어가로 간주하여 부적격가구임
- 가구주이외 가구원이 어업을 경영할 경우는?
 - 가구주 이외의 가구원이 종사할 때도 어가로 간주하여 부적격가구임
- 어선을 빌려주는 경우는?
 - 어선만을 소유하고 있고, 직접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가구는 적격가구임 어선을 빌려주고 받은 수입은 기타재산소득에 기입
- 민물고기를 기르는 경우와 어선을 사용하지 않고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 어선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면이나 내수면에서 정치망어업, 수산양식업, 해면 양식업 등을 영위하는 가구는 어가로 보아 부적격가구로 처리
- ※ 가구주 및 가구원이 단순노동으로 수산물을 채취하는 경우는 적격가구임
- 가구주가 수산회사 취업한 경우는?
 - 근로자가구로서 적격가구로 조사

나. 그 외 제외되는 가구

음식숙박 결용주택 가 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음식점, 여관, 하숙업을 경영하는 가구 중에서 동일 거처 내에서 영업활동과 주거생활이 이루어지는 가구<ul style="list-style-type: none">제외이유 : 동일거처에서 가구의 소비지출 중 식료품비, 전기세, 수도료 등의 필수적 지출과 영업을 위한 경비를 분리하기 곤란하기 때문동일거처가 아닌 경우 : 식사나 숙박을 사업장에서 하는 경우 그 비용은 자가생산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현물소득처리 후 해당 소비지출에 분류
장기출타 가 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장기출타가 잦은 가구의 경우는 전출처리하지 않으며 부정기적 출타 사유로 인한 부적격가구로 처리
비 혈연 가 구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가사사용인이나 영업상 사용인(비혈연가구원)이 2인 이상 동거하는 가구2인 이상 비혈연가구원으로만 이루어진 가구 ex) 혈연관계가 아닌 친구나 학생들끼리 동거
외국인 가 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외국인들로만 구성된 가구나 외국인 1인가구의 경우<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사는 경우는 한국인을 가구주로 하여 적격가구로 처리
기타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집단시설가구 :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기숙사나 보육원, 양로원 등에서 집단적으로 숙식하며 생활하는 경우
전입·전출 가 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조사 월에 전입을 하거나 전출한 가구가 있는 경우<ul style="list-style-type: none">전입 가구 : 전입 다음 달부터 조사된 가계부를 반영전출 가구 : 전출 전 달까지 조사된 가계부만을 반영 (단, 전출 후에 전출된 달 마지막 날까지 가계부를 써서 제출한 경우는 포함)※ 제외사유 : 전입과 전출이 있을 경우 완전한 한 달의 소득과 지출이 나올 수 없기 때문

03 조사대상 가구원

가구원
정의

- 주민등록 등재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실상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 가구원에는 ① 혈연관계의 가족, ② 비혈연관계의 타인이 있으나 ①의 혈연관계의 가족이라도 취업이나 유학 등의 사유로 같이 생활을 하지 않으면 가구원에서 제외

조사대상
가구원

-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및 보호자인 가구원(기간불문)
- 예비군 훈련 중인 가구원
- 공익근무요원, 산업체근무요원으로 출·퇴근하는 가구원
- 미결수나 구류처분을 받고 경찰서에 수감 중인 가구원
-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직업군인
- 구직, 무단가출 등으로 집을 떠나 정착여부를 알 수 없는 1개월 미만의 부재중인 가구원
- 선박, 항공기, 철도, 버스 등의 승무원으로 기숙사가 아닌 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구원
- 3개월 미만의 단기 유학생
- 조사월에 출생한 신생아

04 조사제외 가구원

조사제외 가구원

- 취업, 취학 등으로 외지에서 하숙, 자취하거나 기숙사에 있는 가구원
- 고아원, 양로원, 모자원, 특수병원, 부녀보호소등의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가구원
- 요양원, 기도원 등에서 장기간 요양 중인 가구원
- 군대, 전투경찰대에 입대한 가구원
- 경찰대학이나 사관학교 등에 입교하여 교육을 받고 있는 가구원
-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 소년원 등에 수용된 가구원
- 선박, 항공기, 철도, 버스 등의 승무원으로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구원
- 구직, 무단가출 등으로 집을 떠난 지 1개월이 넘는 가구원
- 3개월 이상의 장기 유학생

전입·전출 가구원

- 위의 조사제외가구원 구분에 포함되지 않는 가구원이 해당 조사월에 전입이나 전출을 하게 된 경우는 해당 조사월의 거주기간이 15일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

※ 주의 사항

- 취업, 학업, 군대, 요양원의 경우에 제외되는 가구원이라고 하더라도 가족일 경우 따로 떨어져 사는 배우자와 자녀 란에 표시

가구원구분사례

- 출장이나 여행으로 잠시 집을 떠나 있는 가구원의 경우?
 - 출장이나 여행으로 집을 비우는 기간이 있을 경우 해당 조사월 거주 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고 15일 이상의 경우는 조사 대상에 포함
- 잠시 친척집에 가 있는 가구원(15일 미만)의 경우?
 - 방학이나 휴가를 맞아 잠시 친척집에 가 있는 경우 해당 조사월 거주 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고 15일 이상의 경우는 조사 대상에 포함
- 낮 시간에만 일을 하고 퇴근하는 파출부의 경우는 조사대상 가구원 해당?
 - 파출부 등 가사사용인이나 영업상 사용인의 경우는 낮 시간뿐만이 아니라 상주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요건이 필요하므로 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 소득이 있는 가장이 취업 관계로 주로 타지에 있고 주말에만 조사대상가구에 와서 살고 있는 경우?
 - 생계를 같이하는 기간이 15일 미만이므로 가구원(주)이 될 수 없고, 실제 가계를 운영하는 사람(배우자)이 가구주임
- 이혼한 가구주(한국국적)가 국적이 미국인인 5살된 아들과 살고 있는데 국적이 다른 아들은 가구원에서 제외?
 - 아들이 미국국적을 갖고 있으나 가구주와 아들이 친자관계에 있고 생계를 같이하므로 미국국적을 가진 아들도 가계부상의 가구원에 포함하여 조사
- 파출부 등 가사사용인이나 영업상 사용인의 경우 조사방식?
 - 가구원과 취업자에 포함하여 소득과 지출의 내역을 조사하되 비밀보호 봉투와 가계부를 별도로 제공
- 친정어머니가 손자녀의 보육을 목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 친정어머니를 가구원에 포함하고 모든 소득 및 지출은 조사하며 보육료로 받은 금액도 가구 내 고용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기입
- 결혼하여 독립된 가구를 이루던 딸이 출산을 위해 조사대상가구에 와서 거주하는 경우?
 - 조사월 15일을 기준으로 같이 거주한 경우 가구원에 포함
 - 딸의 경우 직업이 있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낸 경우는 모두 취업에 해당
 - 출산휴가 때 직장에서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인 반면 육아휴직의 경우 받는 소득은 사회보장수혜로 분류

part

03

조사공무원 담당업무

1. 조사일정에 따른 업무
2. 가계부 배부시 유의사항
3. 가계부 기입지도
4. 가계부 회수시 유의사항

Part III



조사공무원 담당업무

01 조사일정에 따른 업무

업무명	담당	추진일정	업무내용
가구관리 및 가계부배부	지방청 담당공무원	전월 28일 ~ 말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가구 방문 및 변동사항 파악 - 요도 및 명부보완 - 전자가계부 아이디등록 및 작성방법 설명 - 가계부 및 비밀보호용 봉투 등 조사표류 배부
표본대상가구 변동처리	표본관리과	금월 1일 ~ 1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 전출입 등 변동내역 확인 - 가구관리명부 작성
기입지도 및 점검	지방청 담당공무원	금월 1일 ~ 말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시방문 및 전화 등을 통한 가계부 기입지도
가계부 회수	지방청 담당공무원	익월 1일 ~ 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가구방문 - 가계부 회수 - 가구실태 작성
내검 · 부호기 입 · 자료입력	지방청 담당공무원	익월 4일 ~ 18일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검토 후 착오내역에 대한 재확인(전화 및 방문 등) - 착오항목 보완 - 가구부문통합관리시스템입력
자료집계 및 결과분석	사회복지통계과	분기별 및 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계수지 내검 및 사례비 지급 - 가계동향조사 특성별 자료집계 및 결과표 작성 - 관련 참고자료 수집 · 작성
결과공표	사회복지통계과	분기별 및 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계동향조사 분기 및 연간 보도자료 작성 - 가계연보 발행 - DB로드 및 KOSIS 서비스

02 가계부 배부시 유의사항

가. 가계부 배부는 전월 28일~30일 3일간 실시

나. 가계부 배부시 유의사항

- (1) 조사대상가구를 방문하기 전 조사에 필요한 자료가 모두 준비되었는지를 확인
 - 신분증, 가계부, 가구명부, 필기도구, 답례품 (배부시) 등
- (2) 의복은 단정하고 부드러운 인상을 주는 것을 입음
- (3) 방문시간은 이른 새벽이나 늦은 오후를 피하고 낮 시간 중 방문하되, 응답자와 낮에 만날 수 없을 때는 사전에 방문시간 예약을 하고 약속된 시간에 방문
- (4) 방문한 가구가 가구명부에 기입된 내용과 일치 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변동이 있을 때는 가구명부 내용을 정정
- (5) 해당 가구의 생활비 지출을 직접 맡고 있는 사람이 가계부를 기입하도록 지도
- (6) 가계부 배부시 대상기간, 기입내용 및 기입기간과 기입요령을 응답자가 알기 쉽게 설명
- (7) 가계부를 배부하기 전에 조사담당자가 가계부에 미리 기입해야 할 사항을 확인
 - 가계부표지 : 조사년월, 조사구번호, 구역 및 거처번호, 가구번호
조사담당 직원의 소속, 성명과 전화번호
 - 정기적인 은행자동이체항목의 수입·지출 항목명

※ 가구실태란은 조사가구의 사적 정보보호를 위해 가계부를 회수 후 면접 조사로 변동사항을 체크하며 작성

03 가계부 기입지도

가. 가계부 기입지도는 월초 가계부 회수시, 월중 가계부 기입기간 중 및 월말 가계부 회수시 실시

나. 가계부 기입지도 내용

- (1) 그 날 구입한 상품이나 수입(현물포함)은 누락방지를 위하여 매일 기입토록 지도
- (2) 구입한 상품에 대한 영수증을 가계부에 직접 기입하는 대신 가계부에 분실

되지 않게 붙여, 그 내용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영수증 상품 내역이 애매할 경우 품목을 병기도록 지도

- (3) 지출 품목이 많아 한 페이지를 넘을 때는 가계부 뒷편의 여분지를 오려 붙여 해당일에 연결하여 기입하고, 수입이나 지출이 전혀 없을 때에는 해당 되는 일자의 가계부 첫줄에 『없음』이라고 기입
- (4) 수입의 종류나 지출 품목명은 한줄에 한 품목만을 기입
 - 한가지 품목을 사면서 일부는 현금을 주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구입한 상품은 두 줄에 걸쳐 그 내용을 기입토록 지도
- (5) 품목을 기입할 때는 가계수지항목분류표를 참고하여 기입
- (6) 급여, 수당 등 수입이 있을 때에는 세금, 적금 등을 공제하기전의 총 소득액을 수입란에 숫자로 기입하고 지출 내용을 아래줄에 기입
- (7) 집에서 직접 생산한 상품, 근무처, 정부 및 비영리단체로부터 현물로 받은 상품 등을 집에서 직접 소비하였을 때는 그것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기입
- (8) 타가구로부터 이전된 상품이나 서비스는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고 조사대상 가구에서 타가구로 이전이 확정된 상태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지출한 경우는 지출 중 선물에 표시
- (9) 가구주가 밖에 나가서 쓴 돈이나 가구원에게 준 용돈이 있다면 어디에 썼는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기입
- (10) 은행계좌로 자동이체되는 금액의 내용을 파악하여 빠짐없이 기입

04 가계부 회수시 유의사항

가. 가계부 회수는 익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실시

나. 가계부 회수시 유의사항

- (1) 지정된 조사기간이 끝나면 가계부를 조속히 회수
 - 조사표 회수가 늦어지면 가계부 분실의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계수지 누락항목에 대한 보충조사가 어렵게 되기 때문
- (2) 가계부를 회수할 때 조사대상가구에서 가계부에 기입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된 것은 즉시 응답자에게 확인하여 보완

다. 조사대상가구에서 주시는 글(응답자기입)

응답자가 기입한 의견이 있으면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여 처리

part

04

가계부 기입방법

1. 표지란
2. 가구실태란
3. 은행자동이체 항목
4. 수입과 지출란
5. 조사대상가구에 드리는 글(조사직원기입)
6. 조사대상가구에서 주시는 글(응답자기입)

Part IV



가계부 기입방법

가계부 구성

- 표지** : 조사대상가구의 관리번호를 기입하는 표지란
- 가구실태** : 가구원항목인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연령, 교육정도, 취업여부, 산업, 직업, 종사상의 지위, 따로 살고 있는 배우자와 미혼자녀, 무직가구의 주된 수입원, 거처구분, 자동차보유, 주거에 관한 사항, 사용면적, 주택소유여부 등 대상가구의 주요 특성을 파악하는 가구실태란
- 은행자동이체항목** : 가계부를 기입할 때 누락되기 쉬운 항목을 기입하는 은행 자동이체 항목란
- 수입과 지출** : 조사대상가구에서 매일 수입과 지출내용을 사실 그대로 빠짐 없이 기록해야 하는 란으로 가계부에서 가장 핵심부분인 수입과 지출란
- 조사대상가구에 드리는 글** : 조사직원이 조사대상가구에게 특별히 전달할 내용이 있을시 기입하는 통신란
- 조사대상가구에서 주시는 글** : 조사대상가구에서 의문이나 건의사항을 기입하는 통신란

01 표지란

_____년 _____월

조사구 번호	구역 및 거처번호	가구 번호
_____ - _____	_____	_____

지방청 및 사무(출장)소
담당공무원
전화

가. 조사년월

_____년 _____월

해당 연도와 월을 기입

나. 조사구번호

표본관리과에서 지정한 해당 조사구의 번호를 기입

(표본가구관리명부 작성요령서 참조)

다. 구역 및 거처번호

--	--

해당 조사구의 가구명부를 보고 지정된 구역 및 거처번호를 기입

(표본가구관리명부 작성요령서 참조)

라. 가구번호

--	--	--

해당 조사구의 가구명부를 보고 조사대상가구의 고유번호를 기입

(표본가구관리명부 작성요령서 참조)

마. 지방청, 사무(출장)소명 및 담당자

지방청 및 사무(출장)소

담당공무원

전 화

지방청 및 사무(출장)소명과 조사 담당자의 성명, 전화번호를 기입

가계부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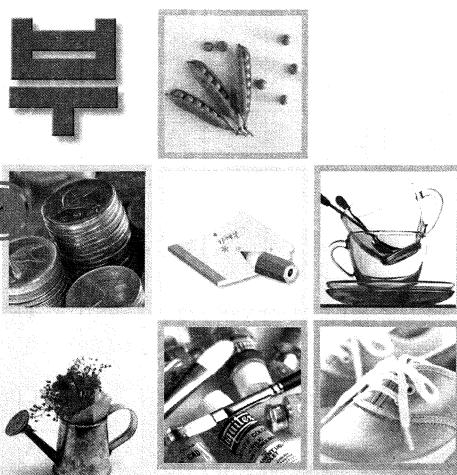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가계부

가계동향조사



년 월

조사구번호	구역 및 거처	가구번호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지방청, 사무(출장)소
담당공무원
핸드폰(전화)

가 구 실 태

※ 담당공무원이 기입합니다. (가구에서 기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I. 가 구 원 사 항															
(1) 가구주와의 관계	(2) 성별	(3) 연령	(4) 교육 정도		(5) 취업여부	(6) 산업			(7) 직업			(8) 종사상지위			
			학력	수학여부		코드	사업체명	주된 활동	코드	일의 종류	직명(직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가구주와의 관계 1. 가구주 2. 가구주의 배우자 3. 미혼자녀 4. 기혼자녀 및 그 배우자 5. 가구주나 배우자의 부모 6. 손자녀, 증손자녀 및 그 배우자 7. 조부모 8. 가구주의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9. 기타												II. 따로 살고 있는 배우자와 미혼자녀 배우자 명 명 명 명 자녀 명 명 명 명			
종사상 지위 1. 상용근로 2. 임시근로 3. 일용근로 4. 고용주 5. 자영자 6. 무급가족종사자 7. 기타															

가 구 실 태

III. 무직가구의 주된 수입원	IV. 거처 구분	V. 자동차 보유
1. 공적연금	2. 공적수혜금	휘발유 : 대
3. 사적보조	4. 임대수입	경유 : 대
5. 이자 및 배당금	6. 저금찾음	6. 주택이외의 거처
7. 빌린 돈	8. 기타	LPG 등 : 대

VI. 주거에 관한 사항

점유 형태	1. 자기집	2. 무상 주택	3. 사택	4. 전세	5. 공공임대	6. (보증부)월세
월세 평가액						
전세·보증금						
월세(사글세)						
○ 주택가격 (전체 천원) ○ 점유율 (전체의 %)	○ 사용면적 (전용) m^2	○ 주택소유여부 : 1. 있음 2. 없음				

02 가구실태란

가. 가구원 사항

◎ 가구원 인적 사항

1) 가구주와의 관계	2) 성별	3) 연령	4) 교육 정도	
			학력	수학여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 주민등록상 세대원과 상관없이 실제 거주하는 사람만 포함

※ 조사에 해당되는 가구원은 앞의 20p의 조사대상 관련사항의 가구원부분을 참조

1)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 해당 가구의 구성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사실상 생계유지를 위한 비용을 주로 조달하고 있는 사람
 - 주민등록상의 세대주와는 관계없음
 - 단순히 가계지출의 의사결정자와는 다름
-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가구주와 가계동향조사의 가구주는 다를 수 있음
 - ※ 직업군인의 경우 가구관리명부에 가구원으로 조사하여 기입하고 가구주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가구주로 처리
 - ※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도 동일가구가 아니어도 되기 때문에 가구주 요건에 해당할 경우 가구주로 처리

가구주구분사례

- 세대주이며 무직인 아버지가 모든 가계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지만 실질적인 생활비는 일을 하는 결혼한 장남이 내고 있는 경우?
 - 세대주와 관계없이 사실상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아들로 가구주처리
- 해외취업자 가구로서 처가 가구주로 되어 있는데 처는 해외에 있는 남편으로부터 월 200만원씩 생활비 보조로 송금을 받고 동시에 공장을 다니면서 월 10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을 경우?
 - 처가 직장을 다니는 경우 그 소득이 생활비 보조금보다 적다하더라도 취업자이며 처를 가구주로 함
- 소득이 있는 가장이 취업 관계로 주로 타지에 있고 주말에만 대상가구에 있는 경우?
 - 생계를 같이하는 기간이 15일 미만이므로 가구원(주)이 될 수 없고, 실제 가계를 운영하는 사람(배우자)이 가구주임

가구주와 관계

〈가구주와 관계표〉

분류	
1. 가구주	2. 배우자
3. 미혼자녀	4. 기혼자녀 및 그 배우자
5. 가구주나 배우자의 부모	6. 손자녀, 증손자녀 및 그 배우자
7. 조부모	8. 가구주의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9. 기타	

- 배우자 : 호적 또는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 기혼자녀 : 본인과 그 배우자까지 포함
- 손자녀 : 증손자녀와 그 배우자까지 포함
- 가구주의 백(숙)부(모) 또는 고(이)모(부) 등 : 부모의 형제자매 및 배우자로써 기타(9)에 기입
- 처남(제), 시아주버니(시누이) 등 : 가구주의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8)에 기입

2) 성 별

- 남자의 경우 「1」, 여자의 경우는 「2」를 기재

3) 연령

- 생년월일은 실제 태어난 날로 파악한 후에 조사대상 기준시점 (해당월 1일 0시)을 적용하여 만 연령을 환산
- 세는 나이, 띠, 출생 연도, 생일(양력, 음력) 등을 참고로 하여 양력으로 환산한 후에 만 연령을 계산
※ 만 연령 = 조사대상 기준시점 - 가구주 생년월일(양력환산)
- 1세 미만의 영아의 경우 「0」 세가 됨

4) 교육정도

학력

〈학력부호표〉

부호	분류	부호	분류
0	무학	1	초등학교
2	중학교	3	고등학교
4	전문대	5	대학교
6	대학원(석사)	7	대학원(박사)

- 학력란은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했거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인정하는 동등한 자격일 경우에 기입
 - 입시학원, 기술학원, 노인대학, 시민대학 등은 정규학교과정에서 제외
 - 공민학교는 초등학교과정, 고등공민학교는 중학교로 처리
 - 전문대학은 초급대학, 전문대학, 대학 2년제, 국제전문학교 2년제, 간호대 3년제 등 4년제 미만 대학을 말함
 - 대학원의 경우 석사와 박사의 과정을 구별

〈수학여부 분류표〉

부호	분 류	부호	분 류
1	졸업	2	재학
3	중퇴	4	휴학

- 수학여부별로 해당부분에 각각 기입
 - 이수의 경우 이전 학력 졸업으로 기입
- 2월 중학교 졸업한 학생
 - ① 고등학교 진학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 중학교졸업으로 처리
 - ② 고등학교 진학할 예정인 학생의 경우
 - 고등학교재학으로 처리
 - 미리 납부하는 등록금은 상급학교 납입금(고등학교)임
- 재수생
 - 고등학교 재수생은 ⇒ 3. 중학생
 - 대학교 재수생은 ⇒ 4. 고등학생
- 검정고시
 -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초등학교 졸업
 -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중학교 졸업
 - 대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고등학교 졸업

◎ 가구원 직업 관련 사항

5) 취업여부	6) 산업			7) 직업			8) 종사상 지위
	코드	사업체명	주된 활동	코드	일의 종류	직명(직위)	

5) 취업여부

취업자

- 취업자(1번) : 경제활동조사의 취업자 개념과 같음

개념

- 비취업자(2번) : 경제활동조사의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제외자 개념과 같음

※ 단, 직업군인의 경우 경제활동조사는 대상외로 분류되지만 가계동향조사에서는 취업자로 분류하므로 주의

취업

- ① 일한 대가로 현물(식사, 주거, 또는 곡물제공)을 받는 경우 현금급료뿐만이 아니라 현물급료를 받는 경우도 포함
- ② 소득의 적자유무를 불문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올리지는 못하였으나 계속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시간을 보낸 경우
- ③ 휴가나 유급휴직의 경우(사회수혜금을 받는 경우도 포함)
- ④ 무급가족종사자는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경우

비취업

- ① 도박이나 매춘같이 법률에 위배되는 활동
- ② 경마, 경륜, 증권, 선물 등 투자활동
- ③ 법률에 의한 강제노역 및 봉사활동

취업자사례

- 부부가 공동으로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자영자가구나 가구원 중 가구의 사업을 도와주는 경우?
 - 위의 경우는 무급가족종사자임
 - 무급가족종사자는 다른 일에 종사하지 않고 가족의 일을 계속적으로 돋는 사람이며, 취업여부는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경우에만 해당됨
 -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군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공공기관 또는 사회기관 복무), 상근예비역(군부대 복무)의 경우?
 - 취업자로 보지 않으나, 소득이 있을 시 소득액은 기입
 - 방위산업업체(연구기관 복무)에서 병역특례로 근무하는 경우?
 - 취업자로 보며, 근로소득으로 기입
 - 직업은 없고 이장 또는 반장 일을 보면서 생활하는 가구원의 경우?
 - 이장이나 반장의 경우 취업에 해당하며 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으로 기입
 - 직업이 있는 이장 또는 반장의 경우?
 - 본래의 직업으로 취업과 직업분류를 기입하고 이장 또는 반장을 함으로써 얻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기입
 - 공로연수자나 사외이사로써 실제근무일이 적은 경우?
 - 퇴직 전 사회적응기간으로 출근하지 않고 급여를 받는 공로연수자와 급여는 있으나 실제근무일이 적은 사외이사 등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취업자에 분류하고 근로소득으로 기입
 - 건설회사 경리로 근무하는데 회사사정이 좋지 않아 현재 4개월째 급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 급료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라도 출근하여 일을 하였으므로 취업인원수에 포함
 - 휴직자의 경우?
 - 유급휴직인 경우 : 취업자로 분류
 - 무급휴직인 경우 : 비취업자로 분류
- ※ 단, 육아휴직의 경우, 소득여부와 관계없이 취업자로 분류하나 매달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소득은 사회보장수혜금으로 기재

6) 산업

- 산업이란 가구원이 근무하는 사업체의 주된 활동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항목
 - 근무처에서 하는 주된 일과는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
- 기재사항 : ① 사업체명
 - ② 사업체의 주된 활동
 - ③ 해당 산업분류코드

사업체명

- 사업체명 : 가구원이 다니는 회사나 기관의 이름을 기입
 - 근로자일 때
 - 다니고 있는 회사나 직장의 이름을 기입
 - 자영자일 때
 - 경영하는 사업체나 점포의 이름을 기입
 - 만일 사업체명이나 점포명이 없는 경우에는 『자기사업』 또는 『가족사업』이라고 기입
 -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일할 때
 - 조사대상기간에 파출부와 같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일하는 사람의 경우와 잡역부와 같이 매일 다른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일한 곳의 특징을 기입

예) 건설잡역 : 건물 공사장

사업체의 주된 활동

- 사업체의 주된 활동
 - 가구원이 근무하는 사업체의 주된 활동이 무엇인가를 파악
 - 가구원이 근무처에서 하는 주된 일을 기재하지 않도록 함 (근무처에서 하는 주된 일은 직업에 기입)

- 여러 가지 산업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체의 경우와 한 사업체에서 두 가지 이상의 산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 ① 각 산업활동이 별도의 장소에서 수행되는 경우는 별개의 사업체로 간주하고 가구주가 실제 일하고 있는 곳의 산업활동을 기입
 - ② 같은 장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주된 활동을 기입
- 가내공업의 경우 : 자기사업을 자기 집에서 수행하는 가내공업의 경우라도 사업체로 간주하여 산업활동을 조사

산업 분류 코드 표

(제9차 개정 - 2008.02.01.시행)

A. 농림어업	B. 광업	C. 제조업
D. 전기, 가스 등	E. 하수, 폐기물, 환경	F. 건설업
G. 도소매업	H. 운수업	I. 숙박, 음식점업
J. 출판, 영상, 정보 등	K. 금융, 보험	L. 부동산, 임대
M. 전문, 과학, 기술	N. 사업시설, 사업지원	O. 행정, 국방 등
P. 교육서비스	Q. 보건, 복지	R. 예술, 스포츠 등
S. 협회, 수리, 개인	T. 자가소비생산활동	U. 국제, 외국
Z. 무직		

7) 직업

- 가구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업체에서 어떠한 종류의 일을 하고 있으며 직위는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파악
- 일의 종류와 직위(직명)을 기입하고 직업코드표에서 해당되는 부호를 찾아 표시
-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경우
 - ① 업무 수행 시간이 많은 일
 - ② 소득이 많은 일의 순으로 주된 일을 기입

직업분류 코드 표

(제6차 개정 - 2007.10.01. 시행)

- | | |
|----------------------|------------------|
| 1. 관리자 | 3. 사무 종사자 |
|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5. 판매 종사자 |
| 4. 서비스 종사자 | 7.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
|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9. 단순노무종사자 |
| 8.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 11. 무직 |
| A. 군인 | |

일의 종류 - 가구원이 근무처에서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기입
(예) 여성의류 판매, 웹 디자인, 경리사무 등

직위(직명)

- 근무처에서의 직명이나 직위를 기입
(예) 계장, 과장, 실장, 상무, 전무, 공장장 등
- 직위는 업무 수행상 책임의 정도 및 수행할 임무의 특수성에 따른 구분으로 가구주의 직업을 명확히 구분하는데 도움을 얻기 위하여 파악

8) 종사상의 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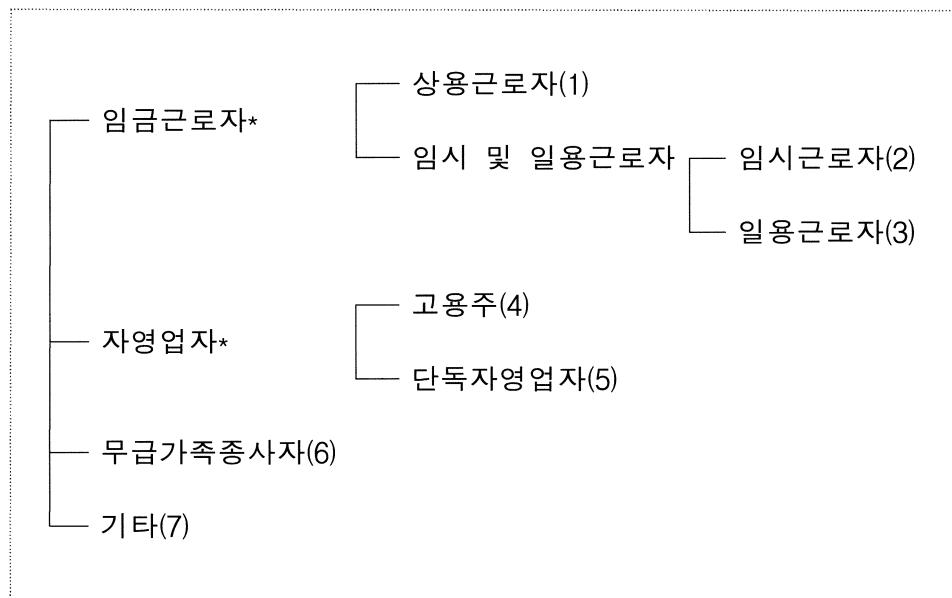
-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상용근로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 등과 같이 취업자가 실제로 일하고 있는 신분 내지 지위상태
- 종사상의 지위 항목표를 보고 해당하는 종사상의 지위 기입

판단기준

- 고용형태는 다양하므로 ① 고용이 자기고용인지 고용을 창출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 근로자와 근로자외를 구분 ② 계약기간에 따라서 분류
- 임금근로자를 분류할 경우 고용계약기간을 우선하여 1년 이상인 경우와 1년 미만인 경우를 판단

-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상용근로로 분류하고 1년미만인 경우에 1개월 이상이면 임시근로자, 1개월 미만이면 일용근로자로 분류
- 고용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으나 일정한 사업완료의 필요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도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이 1년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1년 이상은 상용근로자, 1년 미만은 임시근로자로 분류
- 동일업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라도 고용계약이 처음부터 임시 또는 일용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내용을 우선하여 임시 또는 일용으로 분류

〈종사상의 지위 분류〉



- *임금근로자 : 개인, 가구 또는 사업체와 명시적(explicit) 또는 암묵적(implicit)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일하고 그 대가로 급여, 일당, 현물 등을 받는 근로자
- *자영업자 :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기 혼자 또는 1인 이상 파트너(무급가족종사자 포함)와 함께 사업을 하는 자

〈종사상의 지위〉

종사상 지위	세 부 내 용
1. 상용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정규직원으로 채용되어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 받으며 상여금·퇴직금 등 각종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사업체의 유급임원(사장, 대표이사, 전무, 상무, 상근감사 등)
2. 임시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임금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사업체에 1년 이상 근무하였으나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거나 처음부터 임시직으로 고용계약이 체결된 사람
3. 일용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임금근로자
4. 고용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속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주일 기간중 1일이라도 정기적으로 고용할 경우 연속성 있는 것으로 봄)
5. 단독자영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속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기 혼자 또는 1인 이상 파트너(무급가족종사자 포함)와 함께 일하는 자
6. 무급가족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영업자(동일가구내로 한정하지 않음)의 가족이나 친인척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해당 사업체 정규 근무시간의 1/3 이상 종사하는 자
7.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근로자나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로 분류하기 어려운 자 -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이 없고 계약된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지만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스스로 직접 제공하고 일한 만큼 실적에 따라 소득(수수료, 봉사료, 수당 등)을 얻으며 근로제공방법, 근로시간 등은 본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형태로 일하는 자

종사상의 지위사례

○ 상용근로자 예시

- 은행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할 것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일하고 있는 사람의 종사상 지위는 상용근로자임
- 공공기관에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종사상 지위는 상용근로자임
- 호텔에 1년 이상 근무할 것으로 고용주와 근로자가 상호 구두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3년째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종사상 지위는 상용근로자임
- 제조업체에 정규직원으로 채용되어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을 적용받고,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지급 받으면서 3개월째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종사상 지위는 상용근로자임
- 임금을 받고 법인업체에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장, 대표이사, 전무, 상무, 상근 감사 등의 종사상 지위는 상용근로자임

○ 임시근로자 예시

- 공공기관에 6개월 단위로 계속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3년째 일하고 있는 사람은 임시근로자임
- 판매업체에 처음 입사할 때 임시직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임시직이라는 계약내용의 변경 없이 5년째 일하고 있는 사람은 임시근로자임

○ 일용근로자 예시

- 1개월 미만 기간 동안 일할 것으로 구두 또는 문서로 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은 일용근로자임
- 건설현장의 일당잡부, 부두 등의 일당제 하역부, 인테리어 공사현장의 일당잡부, 조경공사 현장의 일당잡부, 사무실 이전 또는 이삿짐 운반을 위한 일당제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임
- 일당제로 급여를 받기로 약속하고 홍보 또는 이벤트 행사장에서 일하는 행사도우미는 일용근로자임

○ 고용주 예시

- 배달원을 두고 도시락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도시락업체 주인의 종사상 지위는 고용주임

- 평일에는 고용된 종업원 없이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는 부인과 함께 일하지만 주말에는 항상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하는 사람을 채용하여 예식장을 경영하는 경우 예식장 주인의 종사상 지위는 고용주임
- 종업원을 고용하여 동업자와 같이 유흥주점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 주인인 이들 동업자의 종사상 지위는 모두 고용주임

○ 단독자영업자 예시

- 고용된 종업원 없이 혼자 보일러수리 사무실을 경영하는 경우 경영자의 종사상 지위는 단독자영업자임
- 고용된 종업원 없이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는 부인과 같이 남편이 슈퍼마켓을 경영하는 경우 남편의 종사상 지위는 단독자영업자임
- 고용된 종업원 없이 동업자와 같이 부동산중개사 사무실을 경영하는 경우 이들의 종사상 지위는 모두 단독자영업자임
- 평소에는 고용된 종업원 없이 혼자 쌀가게를 경영하였으나 손목을 다쳐 연속성 없이 잠시 동안 아르바이트 배달원을 고용하여 경영하고 있는 경우 쌀가게 주인의 종사상 지위는 단독자영업자임

○ 무급가족종사자 예시

- 부인이 경영하는 음식점에서 남편이 임금을 따로 받지 않고 정규근무시간 1/3 이상 시간동안 음식재료 구입, 음식대금수수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남편의 종사상 지위는 무급가족종사자임
- 남편이 경영하는 철물가게에서 부인이 임금을 따로 받지 않고 정규근무시간 1/3 이상 시간동안 전화 받기, 물건판매, 재고파악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인의 종사상 지위는 무급가족종사자임
- 어머니가 경영하는 음식점에서 이웃에 따로 살고 있는 아들이 임금을 받지 않고 정규근무시간의 1/3 이상 시간동안 음식 나르기, 음식대금수수, 청소 등을 수행하는 경우 아들의 종사상 지위는 무급가족종사자임

○ 기타 예시

- 보험모집인, 골프장 캐디, 레미콘차량 운전사, 화물·덤프트럭 운전기사, 방송 구성작가,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배달원, 간병인, 학습지 방문교사, 외근직 A/S근무요원 및 판매원의 경우

-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 또는 도급계약'에 의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써,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는데 반해 자신의 계산 하에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자를 말함
- 따라서 종사상의 지위는 기타에 해당하지만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기입

○ 통역 등의 일을 하는 경우 아래의 경우를 참조하여 분류

구 분	종사상의 지위	소득분류
자기 사업체	고용규모에 따라 고용주나 단독경영자로 분류	사업소득
회사에 고용되어 연봉을 받음	계약기간에 따라 상용, 임시, 일용 근로자로 분류	근로소득
협회나 중개업소에서 수수료 내고 알선받음	기타에 분류	협회에 내는 수수료는 제외하고 받은 보수는 사업소득으로 분류

○ 가내작업의 경우

- 사업체에서 제공한 원료 및 반제품을 받아다가 가정에서 하청작업을 하고 일한 만큼 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기타로 처리
- 원료 자체를 직접 구입하여 가정에서 작업하는 경우는 자영자로 봄

○ 가구원이 파출부인 경우?

- 일정한 기간, 일정한 시간에 가서 정기적으로 일을 하여 주는 사람(비록 여러 집이라 하더라도)은 1년의 기간을 기준으로 임금근로자나 임시·일용 근로자로 분류

○ 무직이면서 임대료로 생활을 영위하는 가구주가 세준 주택의 하자를 직접 수리를 하였을 경우?

- 방세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의 소득이 사업소득이고 비록 일시적으로 세준 방을 고쳤다 하더라도 이는 직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업자가 아님
- 그러나 사는 집과 떨어져 있는 빌딩을 소유하고 빌딩의 관리를 위하여 매일 출근하여 빌딩의 보수, 보일러 관리, 청소인의 관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자영자로 분류

○ 가구주가 다단계 판매를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 종사상의 지위는 기타로 분류하고 소득은 사업소득에 기입

○ 군복무 관련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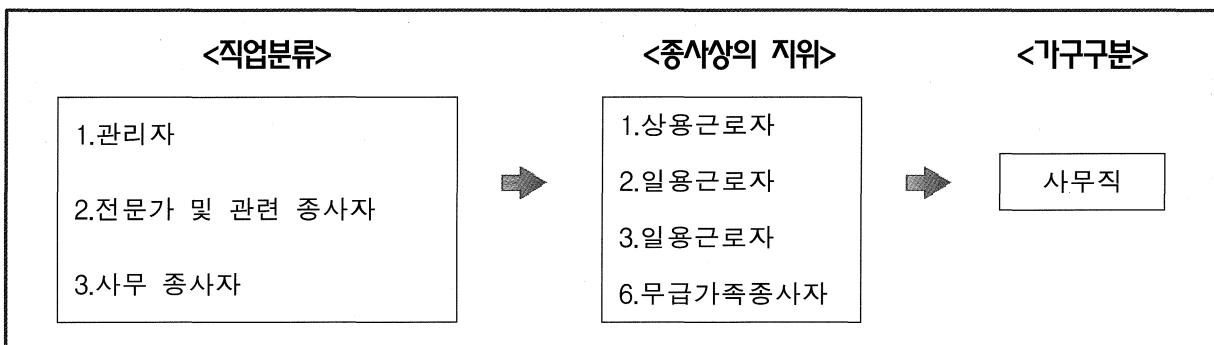
구분	가구원포함여부	취업여부
현역의무병	군대에서 생활하므로 가구원에서 제외	- 가구원에서 제외되므로 취업여부 조사하지 않음
방위산업업체 등에서 병역특례 요원으로 근무	가구에서 출퇴근하며 근무하는 경우는 가구원포함	- 산업은 해당 방위산업업체의 산업을 기입 - 직업은 근무처에서 하는 일로 분류 - 종사상의 지위는 고용기간에 따라 상용 근로자, 임시근로자 또는 일용근로자로 분류
직업군인	가구에서 출퇴근하며 근무하는 경우는 가구원포함	- 산업은 O. (행정, 국방) - 직업은 Z. (군인) - 종사상의 지위는 상용근로자로 분류

※ 가구구분방식

- 가구주의 직업에 따라 가구를 사무직, 생산직, 자영자, 무직으로 구분
 - 가구구분은 가구실태에서 조사된 종사상의 지위와 직업분류를 이용
- 조사대상기간 중 가구주의 직업이 바뀐 경우는 당해 월의 주된 직업에 따라 구분하며 가구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가구주의 직업에 따라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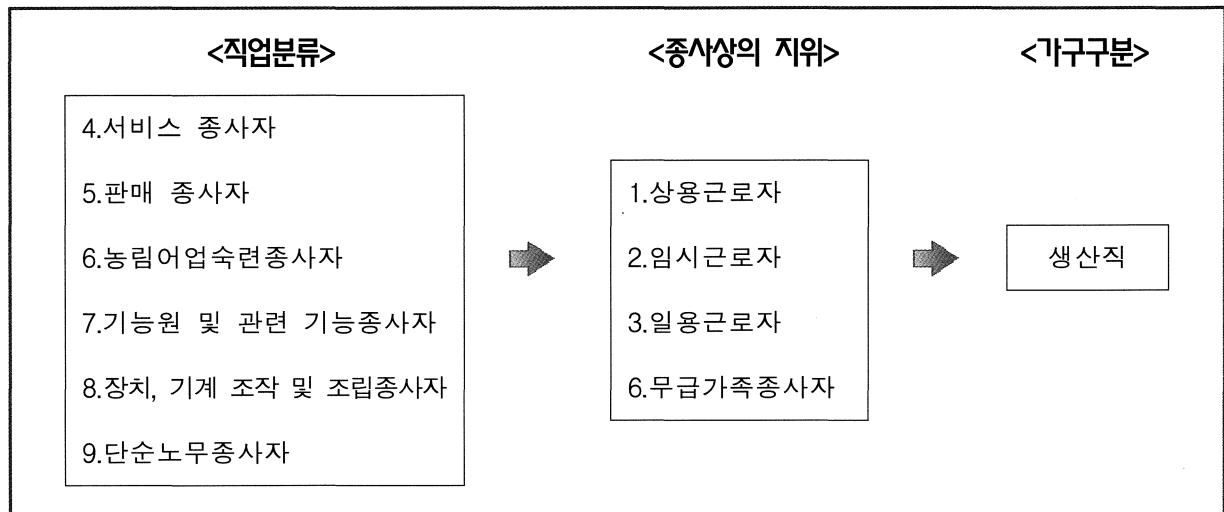
1) 사무직의 경우

- 직업분류의 대분류가 1~3에 해당하고 종사상의 지위 분류가 1,2,3,6 인 가구주가 있는 가구의 경우 사무직으로 분류



2) 생산직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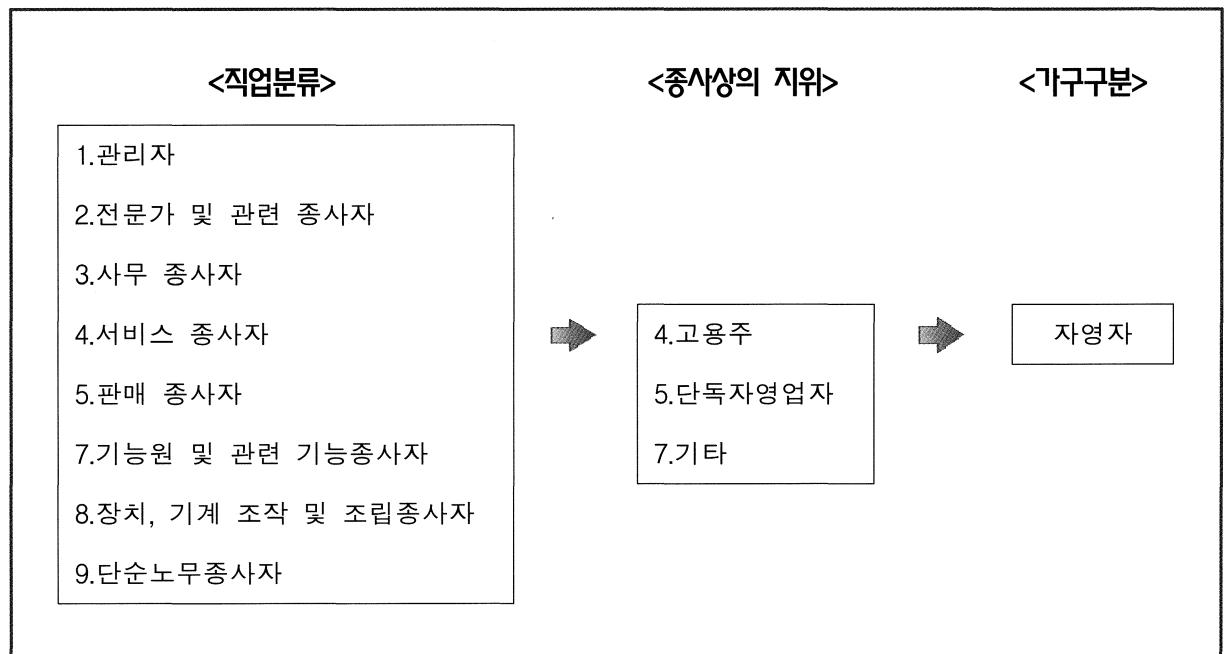
- 직업분류의 대분류가 4~9에 해당하고 종사상의 지위 분류가 1,2,3,6인 가구주가 있는 가구는 생산직으로 분류



※ 단, 군인의 경우는 사무직으로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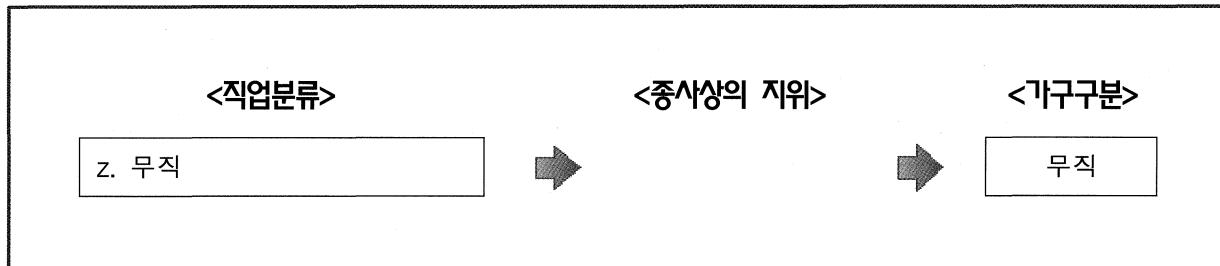
3) 자영자의 경우

- 직업분류의 대분류가 1~9에 해당하고 종사상의 지위 분류가 4,5,7인 가구주가 있는 가구는 자영자로 분류



4) 무직의 경우

- 직업분류의 대분류가 무직인 가구주가 있는 가구의 경우 무직으로 분류



나. 따로 살고 있는 배우자와 미혼자녀

II. 따로 살고 있는 배우자와 미혼자녀			
	취업	학업	기타
배우자	명	명	명
자녀	명	명	명

학업	○ 학업이나 취업, 요양, 기타의 사유로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가구주의 배우자와 미혼자녀를 조사
	○ 타 지역이나 외국에서 학업으로 인해 하숙, 자취하거나 기숙사에 있으며 조사대상가구의 부담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직계 가족이 있을 경우
	○ 단, 직장에서 경비를 대주며 외국에 파견하여 공부 및 연구하게 하거나 연수를 받는 경우에는 『취업』에 해당
취업	○ 타 지역에서 회사나 관공서 등에 근무하거나 사업 등을 하여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직계가족
	○ 요양원, 기도원 등에서 장기간 요양 중인 가족의 경우
	○ 군대나 전투경찰대에 입대한 가족이 있을 경우
기타	○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 소년원 등에 수용된 경우

따로 살고 있는 배우자와 미혼자녀구분사례

- 병원에 입원하여 3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는 미혼자녀가 있는 경우 따로 떨어져 지내는 미혼자녀에 해당?
 -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 및 보호자인 가구원이 있을 경우에는 기간을 불문하고 함께 사는 가구원으로 처리
- 집에서 출퇴근하는 공익근무요원인 배우자나 미혼자녀가 있는 경우 따로 떨어져 지내는 배우자 및 미혼자녀에 해당?
 - 공익근무요원이나 산업체 근무요원, 직업군인으로 출·퇴근하는 배우자 및 미혼자녀가 있을 경우는 함께 사는 가구원으로 처리
- 배우자나 미혼자녀가 1개월 이상 지방 출장을 다니거나 국외 출장이 빈번한 경우에 따로 떨어져 사는 배우자나 미혼자녀에 해당?
 - 출장, 친지 방문, 여행, 행상 등으로 조사대상월 거주기간이 15일 이상이면 가구원수에 포함되며 조사대상월 거주기간이 15일 미만이면 가구원수에 포함되지 않음
- 가족 중에 항공기 기장이 있어서 거주기간이 일정하지 않는 경우?
 - 선박, 항공기, 철도, 시외·관광버스 등의 텁승 승무원의 경우 가구에서 같이 거주하는 경우만 함께 사는 가구원으로 처리
 - 위의 경우라도 기숙사에 있다면 가구원에서 제외하고 따로 떨어져 사는 배우자나 미혼자녀로 처리
- 결혼한 자녀가 있는 경우 따로 떨어져 사는 가족에 해당?
 - 결혼 후 분가하여 사는 기혼 형제와 자녀는 동일 가구의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고 따로 사는 가족에도 포함되지 않음
- 따로 떨어져 사는 주말부부의 경우?
 - 학업이나 취업으로 인해 따로 떨어져 살다가 주말에만 만나는 부부의 경우는 한 가구가 아니라 각각 다른 가구이므로 따로 떨어져 사는 가족으로 처리
- 노인요양병원이나 기타 유사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요양으로 보아 가구원에서 제외하고 따로 떨어져 사는 가족의 기타분류로 처리

다. 무직가구의 주된 수입원

III. 무직가구의 주된 수입원

- | | |
|-------------|----------|
| 1. 공적연금 | 2. 공적수혜금 |
| 3. 사적보조 | 4. 임대수입 |
| 5. 이자 및 배당금 | 6. 저금찾음 |
| 7. 빌린 돈 | 8. 기타 |

- 가구주가 무직인 가구만 조사
 - 무직가구의 생활비는 주로 어떤 소득에 의하여 충당되는지를 파악하는 항목
- 무직가구란 가구주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연금, 타가구로부터의 송금보조, 이자소득 등에 의하여 운영하는 가구
 - 두 가지 이상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경우에는 생활비로 충당되는 금액이 큰 것으로 기입

공적연금

- 공적연금 : 국민연금 또는 이를 대신하는 특정직업군에 속했던 사람이 매월 일정액을 반복적으로 지급받는 금액
(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 개인연금 : 개인연금의 경우는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에 표시

공적 수혜금

- 연금을 제외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이전소득으로 생활하며 기여금 또는 부담금의 적립 없이 연령, 소득, 부, 메달획득 및 유공인정 등 특정조건을 만족한 경우 지불받는 수혜금
 - 기초노령연금 :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적은 사람에게 지불하는 수혜금

- 사회수혜금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모자가구, 차상위계층, 노인가구 등 사회적 약자에게 지급·지원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현금 또는 현물 및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으로부터 사회보장수혜
(예) 모성보호, 육아휴직자에 대한 정액급여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장애인수당)

3자녀 이상 출산가구에 대한 출산장려금 등 지원

질병휴직 중에 지급되는 급여 및 건강보험부담 지급

강제퇴직자 및 유족에 대한 연금 및 부담금

체육인연금, 보훈연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보상액

산업재해자에 대한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실업급여수령액

노인장기요양보험수령액

- 사회적 현물이전 : 정부 및 비영리단체가 특정지출 목적을 지정하거나, 직접 현물을 구입하는 등 현물형태로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

(예) 의료급여수급권자(생활보호대상, 의사상자, 독립유공자,

무형문화재, 탈북주민 등)의 의료혜택

저소득 노인, 아동, 여성 등에 대한 의료, 교육, 출산관련비,

무료예방접종

산업재해자에 대한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등 실비지급

장애인의 통신비, 유류비 지원 등

사적보조

- 민간단체나 개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돈으로 생활하는 경우를 말하며, 여기에는 친척이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보조받은 송금 및 생활보조금도 포함
- 기타이전소득 : 비영리단체(각종사회단체 및 노동조합 등) 및 고용과 상관없는 기업으로부터 경상적으로 보조받는 생활비, 교육비 등
- 가구간이전 : 타가구로부터 경상적으로 보조받는 생활비, 교육비 등 이전으로써 주거를 달리하는 가족으로부터 경상적 이전 포함

임대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토지, 기계장비, 자격증 등에 대한 임대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재산소득 : 공장용지, 주차용지 등 각종 토지 임대소득, 광업권 임대소득, 저작권, 특허권, 인세, 자격증 대여소득 등 - 사업소득 : 주택 등 임대소득, 작가의 인세소득, 발명가의 발명안(案) 판매소득 등
이자 및 배당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자산에 대한 이자나 주식배당금 등으로 생활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자소득 : 채권(국공채), 저금(예금, 적금), 사채 등의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보험, 신탁, 주식 등의 배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저금찾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축해 두었던 돈을 찾아서 생활하는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축 및 보험탄 금액 : 금융기관(은행, 우체국 등)에 불입한 적금 또는 예금의 인출 및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수령 -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 금융기관에서 가구 및 사용자 등의 일정 불입에 대한 반대급부로 일정기간, 일정금액을 연금과 같은 형식으로 정기적 지급하는 경우
빌린 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가구나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부채증가)으로 생활하는 경우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이외의 비경상소득 등으로 생활하는 것이 해당

라. 거처구분

IV. 거처구분

1.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2. 아파트
3. 연립주택
4. 다세대주택
5. 비거주용 주택
6. 주택이외의 거처

단독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상 한가구가 살림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로서 주택의 요건을 갖춘 것○ 소유주가 1명(공동명의 포함)인 다가구주택도 포함
아파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층 이상 공동주택이 해당○ 4층 이하라도 아파트로 허가받았으면 아파트로 처리
연립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건축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받아 가구별로 매매가 가능한 주택 (2~4층의 빌라, 맨션 등)○ 다세대 주택은 각 호별로 각각 분리하여 사고 팔 수 있다는 점에서 다가구 주택과 다름
다세대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다세대 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 동당 건물 연면적이 $660m^2$를 초과하면 연립주택이며 $660m^2$ 이하는 다세대주택으로 처리
비거주용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거주용 건물 내 사람이 살 되 그 거주 부분이 주택의 요건(방, 부엌, 독립된 출입구)을 갖추고 있는 경우○ 상가, 학원 등 영업을 목적으로 지은 집이지만 살림하는 부분이 주택의 요건을 갖추었으면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으로 처리

주택이외의 거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이외의 거처란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주공간 ○ 오피스텔, 판잣집, 비닐하우스나 임시적 거주를 위한 구조물이나 위에서 예시되지 않은 주택이외의 거처가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ex) 주택의 요건- 가구가 독립적인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지어진 집으로 ①영구 또는 준영구 건물이며 ②부엌과 한 개 이상의 방을 갖추고 있으며 ③독립된 출입구를 갖추고 있으며 ④ 관습상 소유 또는 매매의 한 단위를 이루고 있어야 함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인지 비거주용주택인지 판단이 모호한 경우에는 주거와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연면적을 비교하여 주거용이 크면 단독주택으로, 영업용이 크면 비주거용주택으로 구분

마. 자동차 보유

V. 자동차 보유

휘발유 : _____ 대

경유 : _____ 대

LPG등 : _____ 대

-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차량소유와 관계없이 실제적으로 차량을 유지보수 및 운영(소유와는 다른 개념)하는 경우
 - 가구용으로 사용하는 것만 기입
 - 가구용 및 영업용으로 사용하나 주로 영업용일 경우 제외
 - 지프나 승합차 등도 가계용일 경우 포함
 - 회사에서 유지비(유류비 등)를 부담하는 경우나 가구에서 유지비(유류비 등)를 부담하는 경우를 구별하지 않고 가구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모두 포함
- ※ 회사에서 유지비를 부담하는 경우 가구에서 쓰이는 부분만큼의 유지비를 소득에 포함

바. 주거에 관한 사항

VI. 주거에 관한 사항

(단위 : 천원)

점유 형태	1. 자기집	2. 무상 주택	3. 사택	4. 전세	5. 공공임대	6. (보증부)월세
월세 평가액						
전세·보증금						
월세(사글세)						
○ 주택가격 (전체 천원) ○ 점유율 (전체의 %)	○ 사용면적 (전용) m^2	○ 주택소유여부 1. 있음 2. 없음				

기입방법

- 6개의 점유형태 중 해당되는 형태에 각각 금액을 표시
 - 점유형태의 『월세평가액』, 『월세』, 『전세 또는 보증금』란에 금액을 조사하여 기입
 - 사선으로 되어있는 항목은 조사하지 않음
- ※ 조사대상월에 같은 거처에서 월세, 전세, 자기집 등으로 바뀐 경우 다음 달부터 변동 처리

점유형태

- 월세평가액은 조사대상가구의 주거와 생활여건 및 노후 정도와 유사한 주택을 월세로 빌린다고 할 때 지불해야 하는 총금액을 기입
- 전세·보증금에는 임차가구에서 임대가구에 제공한 전세금 및 보증금을 기입
- 월세는 임차가구에서 주거를 위해 임대가구에게 실제로 지급한 비용을 기입

자 기 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세평가액 : 임차한 주거가 아닌 주택에서 거주하는 형태로, 소유권이 별도 가구를 구성하는 가족에게 있는 경우에도 해당 ○ 타 가구가 제공하는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① 유지비용을 부담하거나 ② 주택관련 세금을 납부하거나 ③ 담보대출이자 등을 부담하는 경우 『자기집』에 분류 ○ 주택가격 : 주택가격은 매매를 가정할 때의 금액(시세가격)으로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또는 조사대상가구에 문의하여 기재 ○ 점유율 : 다른 가구에게 임대해준 부분이나 영업부분을 제외한 부분으로 전세나 월세 등 임대 부분이 없을 시 점유율 100%로 기재 <p>※ 주택가격과 점유율은 자가의 경우만 기재</p>
무상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차한 주택에 거주하면서 임대가구에게 주택임차료를 전혀 지불하지 않고 살고 있는 형태
사 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주나 가구원이 근무하는 회사나 관공서 소유의 사택을 소속직원에게 임대한 형태
전 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차인이 전세금을 임대인에게 제공하고 거주하다가 임대계약이 만료된 때 나오면서 전세금을 되돌려 받는 형태
공공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정책에 따라 공급하는 주거형태
월 세 및 사 글 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부)월세에는 순수 월세, 보증부 월세, 사글세, 보증부 사글세가 포함됨 ○ 항목 기입 시 보증금과 월세는 구분하여 해당란에 기입하고, 사글세는 사글세 총액을 계약기간으로 나누어 산출된 금액을 해당 월의 월세로 기입

사용면적

- 사용면적은 주거용으로 사용된 건물의 면적을 기입하는 것임
- 조사대상 가구가 주인가구일 경우에는 주택 전체의 연면적에서 임대한 부분을 제외
- 조사대상가구가 전세나 월세 등으로 세 들어 살고 있는 경우에는 임차한 면적만 기입
- 주거용과 영업용 겸용주택인 경우에는 영업용 부분 제외
-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의 연면적에서 건평만 조사(토지, 창고 제외)
- 아파트, 다세대 주택은 분양면적에서 공용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 기입

주택소유 여부

- 현재 자가에 살고 있는 경우와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전세 또는 월세를 살고 있더라도 타 지역에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 있음』에 해당
- 현재 중도금만 불입되어 있는 경우도 『1. 있음』에 해당
 - 주택 소유 여부에 『1. 있음』으로 표시했어도 이를 타 가구에 임대하고 본인은 전세나 월세 등의 형태로 거주할 경우 위의 『점유 형태』에서 전세나 월세로 기입한다.
 - 점유형태가 자가인 경우에는 반드시 『1. 있음』으로 표시

※ 주의 사항

- 사용면적과 주택소유여부는 주거형태에 관계없이 모두 기입
- 주택가격과 점유율은 자기집인 경우만 기입

090 전월에서 넘어온 현금

은행자동이체항목(I) (가구주 소득)

* 부 호 기입란	일 자	은행자동이체되는 수입 종류 및 지출 품명	수 입	지 출
0110		가구주의 급여		
0110		가구주의 수당		
0120		가구주의 상여금		
9010		가구주의 소득세		
9110		가구주의 국민연금		
9120		가구주의 기여금(국민연금외)		
9130		가구주의 건강보험료		
9140		가구주의 고용보험료		
9420		가구주의 사우회비, 상조회비		
0210		가구주의 사업소득		
0210		가구주의 사업소득		
0410		가구주의 연금소득		
0410		가구주의 연금소득		
0430		가구주의 사회수혜금		
0430		가구주의 사회수혜금		
0430		가구주의 사회수혜금		
		가구주의 기타수입		
		가구주의 기타수입		

은행자동이체항목 (II) (배우자 또는 기타가구원 소득)

* 부호 기입란	일자	은행자동이체되는 수입 종류 및 지출 품명	수입	지출
		()의 급여		
		()의 수당		
		()의 상여금		
9010		()의 소득세		
9110		()의 국민연금		
9120		()의 기여금(국민연금외)		
9130		()의 건강보험료		
9140		()의 고용보험료		
9420		()사우회비, 상조회비		
		()의 사업소득		
		()의 사업소득		
0410		()의 연금소득		
0410		()의 연금소득		
0430		()의 사회수혜금		
0430		()의 사회수혜금		
0430		()의 사회수혜금		
		()의 기타수입		
		()의 기타수입		
		※ 합계		

은행자동이체항목 (III)
(주거비, 방송, 교통, 통신 등)

* 부호 기입란	일자	은행자동이체되는 수입 종류 및 지출 품명	수입	지출
2810		상수도요금		
2820		하수도요금		
2910		전기요금		
5360		T V 수신료		
5360		케이블방송수신료		
5360		위성방송 수신료		
2920		도시가스		
4950		일반전화요금		
4970		인터넷이용료		
4960		()의 핸드폰 요금		
4960		()의 핸드폰 요금		
4960		()의 핸드폰 요금		
4960		()의 핸드폰 요금		
4960		()의 핸드폰 요금		
4930		()의 핸드폰 할부금		
4930		()의 핸드폰 할부금		
※ 합계				

은행자동이체항목 (IV) (적금, 보험, 신용카드 등)

* 부호 기입란	일자	은행자동이체되는 수입 종류 및 지출 품명	수입	지출
0310		()의 이자 수입		
0310		()의 이자 수입		
9150		() 주택담보 대출이자		
9160		() 기타이자 (무담보)		
9520		() 저축 및 적금		
9520		() 저축 및 적금		
9520		() 저축 및 적금		
9520		() 저축 및 적금		
		() 보험료		
		() 보험료		
		() 보험료		
		() 보험료		
		() 보험료		
		() 보험료		
		() 보험료		
9610		() 부동산대출상환		
9610		() 부동산대출상환		
9620		() 카드결제대금		
9620		() 카드결제대금		
9620		() 카드결제대금		
9620		() 카드결제대금		
9620		() 카드결제대금		
		※ 합계		

은행자동이체항목 (V) (육아 및 교육비 관련)

* 부호 기입란	일자	은행자동이체되는 수입종류 및 지출품명	수입	지출
8230		()의 보육료		
8230		()의 보육료		
6010		()의 유치원 납입금		
6010		()의 유치원 납입금		
		() 학교 납입금		
		() 학교 납입금		
		() 학교운영지원비		
		() 학교 납입금		
		() 학교운영지원비		
7540		()의 학교 급식비		
7540		()의 학교 급식비		
1210		()의 학교 우유		
1210		()의 학교 우유		
		()의 ()학원비		
		()의 ()학원비		
		()의 ()학원비		
		()의 ()학원비		
		()의 ()학원비		
		()의 방문학습지		
		()의 방문학습지		
		()의 개인교습(과외)		
		()의 개인교습(과외)		

은행자동이체항목 (VI) (아파트 관리비 내역)

* 부호 기입란	일자	은행자동이체되는 수입종류 및 지출 품명	수입	지출
2860		일반관리비(아파트)		
2860		승강기유지비(아파트)		
2860		장기수선충당금(아파트)		
2860		위탁수수료(아파트)		
2860		기타관리비(아파트)		
8320		화재보험료(아파트)		
2890		아파트소독비(아파트)		
2810		상수도료		
2810		공동수도료		
2810		급탕비		
2820		하수도료		
2910		공동전기료		
2910		세대별전기료		
2910		승강기전기요금		
5360		T V수신료		
5360		케이블방송수신료		
5360		위성방송수신료		
2920		도시가스		
2970		공동주택난방비(중앙난방)		
2830		음식물처리비		
		※ 합계		

03 은행자동이체 항목

- | | |
|---------|---------------------------------------------------------------------------------------------------------------------------------------------------------------------------------------------------------------------------------------------------------------------------------------------------------------------------------------------------------------------------------------------------------------------------------------------------------------------------------------------------------------------------------------|
| 기입하는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조사대상가구가 금융기관의 『자동납부제도』를 이용하여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각종 공과금·카드대금·보험료·적금을 납부하거나, 생활비 또는 교육비를 송금하는 경우 |
| 기입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가계부 배부시 조사대상가구의 계좌로 급여, 연금 및 공공요금, 부금, 정기적금, 신용카드대금, 백화점 카드 대금 등의 자동입출항목을 파악어떤 가구원의 것인지를 먼저 선택한 후 이를 가계부의 예시에 따라 기입은행자동이체항목에 미리 열거한 항목이외의 수입이나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빈칸을 이용하여 기입하도록 지도 |
| 주의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서비스나 물품의 구입대금을 일회적으로 은행계좌나 이체 등에 의하여 송금하는 경우는 현금지출로 되므로 은행자동이체항목에 기재하지 않음은행자동이체 항목이 일일수지면과 중복하여 기입되어 있지 않은지 점검하여 중복기입이 있으면 가구에 확인하여 수정가계부 회수 후 내검시 기재누락이 있는지 확인아파트 관리비나 통합 공과금 납부시에는 일반관리비와 난방비, 전기요금, 상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 도시가스 사용료, 일반폐기물 수수료, TV 수신료 등을 따로 분리하여 기입영업을 하고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에는 가옥임대료,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은 가계분만 기입<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업용 점포분과 가계분이 구분되어 지불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용 부분과 주거용 부분과의 면적이나 전등수의 비율에 따라 가계분만 추정하여 기입 |

※ 자동납부제도

공공요금이나 신용 카드사가 이용대금 지불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수령할 기업 및 중개자인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의해 납부 기한 일에 가구원의 예금구좌에서 대금을 요청한 기관 측에 자동적으로 지불되는 제도

수 입 과 지 출

같이 살고 있는 모든 가구원의 실제 수입과 실제 지출을 원단위까지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0

04 수입과 지출란

가. 조사항목별 기입방법

- 해당되는 일자의 페이지에 기입하며, 수입·지출품목이 많아 한 페이지를 초과할 경우에는 가계부 뒷면의 여분지를 오려붙여 계속 기입
- 수입 종류 및 지출의 품명과 용도
 - 가구에 현금이나 현물이 들어오는 경우(타가구로부터 대가없이 받은 현물 수입은 제외)에는 수입의 종류 및 공제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하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한 경우는 품명과 용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입
 - 매월 정기적으로 지출하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을 일괄 납부한 경우 몇 개월 분인가를 기입
- 수입(현금, 현물)
 - 가구의 현금수입과 현물수입을 금액은 『원』 단위로 모두 기입
 - 현물(타가구로부터 대가없이 받은 현물수입은 제외)을 받거나, 자가생산물이나 자가 판매하는 상품을 직접 소비한 경우에는 소비자 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을 기입
 - 현물 수입의 경우만 체크란에 표시하고 현금수입의 경우는 체크란에 표시하지 않고 금액만 기입
- 지출(현금, 신용카드 및 외상, 선물)
 - 가구에서 구입한 상품 값이나 교육비, 각종 수리비 등의 서비스대금을 지불한 때 그 금액은 『원』 단위로 기입
 - 『현금』란은 현금 또는 수표를 지불한 경우
 - 『신용카드·외상』란은 상품이나 서비스 대금을 할부, 신용카드, 외상 지출한 경우
 - 『선물』란은 조사대상가구에서 타가구로 이전이 확정된 상태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지출한 경우에 표시
 - 『신용카드·외상』, 『선물』의 경우만 체크란에 표시하고 현금지출의 경우는 체크란에 표시하지 않고 금액만 기입
 - 상품이나 서비스 대금을 일부는 현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불한 금액과 외상으로 구입한 금액을 구분하여 두 줄로 기입

나. 가계수지 유형별 기입방법

1) 현금수입의 경우

가) 급여, 임금 등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가구주의 소득과 가구원의 소득을 구분하고 그 종류와 금액을 기입
 - 『수입의 종류 및 지출의 품명과 용도』란에 어떤 종류의 소득인가, 누구의 소득인가, 몇 월분의 소득인지 등을 자세하게 기입
 - 예) 9월분 가구주의 급여, 3/4분기 장남의 상여금, 하반기 배우자의 특별상여금 등
 - 금액은 원천 징수 전 총소득을 기입
 - 이때 원천 징수된 소득세, 주민세, 기여금, 건강보험료 등의 공제된 내용과 금액을 세분하여 기입(기입예시 1 참조)

(기입예시 1)

수입 및 지출의 품명과 용도	수 입		지 출		신용카드·외상	선물
	금 액	현물	금 액	현물		
가구주 9월분 급여	1,968,60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가족수당	60,00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정근수당가산금	60,00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시간외수당	232,73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정액급식비	130,00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교통 보조비	130,00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가계지원비	328,75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소득세		<input type="checkbox"/>	143,68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주민세		<input type="checkbox"/>	14,36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임금기여금		<input type="checkbox"/>	186,37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국면연금		<input type="checkbox"/>	135,64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지정기부금(봉우리웃)		<input type="checkbox"/>	2,00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직장협의회비		<input type="checkbox"/>	7,87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급여를 부정기적으로 받는 경우

- 2개월분 이상의 급여를 일시에 받는 경우라도 그 총액을 당월에 기입
- 급여나 임금을 두 곳에서 받는 경우는 어느 근무처에서의 급여인가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입
 - 부업소득이 있는 경우 누락될 수 있으므로 근무처별 소득이 중요
- 급여의 일부밖에 지급이 안 된 경우는 「가구주 10월분 급여의 일부만 지급됨」같이 기입
- 급여 지급일이 월말인 경우 다음달 1일에 기입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중복되거나 누락될 우려가 있으므로 당월 말에 기입하도록 주의
- 근로소득을 은행의 예금계좌를 통해 받는 경우는 급여날에 보수명세서를 보고 급여 총액과 각종공제 내역을 은행자동이체항목 기입란이나 일일 가계수지란 중에서 어느 한쪽에만 현금으로 받을 때와 같은 방법으로 기입

(기입예시 2)

수입 및 지출의 품명과 용도	수 입		지 출		신용카드·와상	선물
	금 액	현물	금 액	현물		
가구주 급여(7,8월분)	3,000,00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대여운전 급여(가구주 부업)	700,00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8월분 급여의 일부만 지급	800,00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급여의 일부를 가불한 경우

- 급여의 일부를 가불한 경우는 가불한 금액은 가불한 날짜에 「급여 일부 가불」이라고 기입(가계수지 부호는 빌린돈 부호)
- 다음에 급여를 받을 때 급여총액에서 가불한 금액을 공제했을 때는 그 공제된 가불금은 「가불금 갚음」이라고 기입(가계수지 부호는 빌린 돈 갚음 부호) 이때 급여는 총액을 기입(기입예시 3 참조)

(기입예시 3)

6월 10일

수입 및 지출의 품명과 용도	수 입		지 출		
	금 액	현물	금 액	신용카드·의상	선물
가구주 6월분 급여에서 일부가봉	300,00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월 25일

수입 및 지출의 품명과 용도	수 입		지 출		
	금 액	현물	금 액	신용카드·의상	선물
가구주 6월분 급여	800,00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상여금	800,00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가봉금 갚음		<input type="checkbox"/>	300,00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슈퍼, 식당 등 자기사업을 하는 가구의 경우 사업경영을 통해 얻은 판매 수입 중에서 가계생활 유지를 위해 가계로 전입된 소득을 기입(동업을 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처리)
 - 『수입의 종류 및 지출의 품명과 용도』란에 누구의 소득인지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도록 기입(예 : 가구주의 사업소득)
 - 『수입』란에 『수입의 종류 및 지출의 품명과 용도』란 내용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입하고 현물인 경우 체크란에 √ 표시
 - 토지 이외의 부동산상 권리의 대여인 주택임대소득이나 상업용 건물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임대용 건물의 재산세 등은 임대소득에서 차감하여 차감된 임대소득으로 기입하며 따로 임대용 건물의 재산세는 기입하지 않음)
- 사업소득에 기입하지 않는 경우
 - 영업상으로 지불한 세금은 기입하지 않음(기입예시 4 참조)
 - 특히 사업상 재료를 구입하기 위한 돈이 가구로 들어왔을 때 이를 기입하지 않도록 주의

(기입예시 4)

수입 및 지출의 품명과 용도	수 입		지 출		신용카드.외상	선물
	금 액	현물	금 액	현물		
가구주 슈퍼에서 사업소득	900,00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1월분 냉세 받음	400,00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종로빌딩 사무실 임대료 받음	900,00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다) 이자 및 임대료 등 재산소득이 있는 경우

- 재산소득에 포함되는 경우
 -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예금이나 적금에 대한 이자, 공사채 이자, 주식배당금 등
 - 토지의 임대료, 저작권 임대료, 각종 자격증 임대료 등(기입예시 5 참조)
- 재산소득에서 제외되는 경우
 - 주택이나 대형건물의 임대업을 경영하는 경우에 발생한 임대료는 사업소득에 포함

(기입예시 5)

수입 및 지출의 품명과 용도	수 입		지 출		신용카드.외상	선물
	금 액	현물	금 액	현물		
사채이자 받음	200,00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예금이자 소득	400,00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라) 연금 등의 소득이 있는 경우

- 연금 등의 소득이 있는 경우는 수입항목 중 이전에 해당
 - ※ 이전 :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반대급부가 아닌 공적연금, 정부, 비영리단체 및 타 가구로부터 받는 보조금 등이 포함

- 국민연금 또는 이를 대신하는 특정 직업군에 속했던 사람이 매월 일정액을 반복적으로 지급받는 금액
- 정부에서 기여금 적립 없이 연령, 소득, 부, 매달획득 및 유공인정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한 경우 지불받는 수혜금
- 비영리단체(각종사회단체 및 노동조합 등) 및 고용과 상관없는 기업으로 부터 경상적으로 보조받는 생활비, 교육비 등 이전
- 타가구로부터 경상적으로 보조받는 생활비, 교육비 등 이전
- 연금 등을 받은 경우 어디에서 무슨 명목으로 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입(기입예시 6 참조)

(기입예시 6)

수입 및 지출의 품명과 용도	수 입		지 출		
	금 액	현물	금 액	신용카드·외상	선물
가구주 퇴직연금	840,00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영세민 생활보조금	130,00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지방에서 근무하는 큰아들이 생활비로 준	300,00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마) 비경상소득이 있는 경우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

○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의 구분

- 원칙적으로 정기성, 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분류하나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발생빈도에 따라 분류
- 정기적이고 반복되는 소득은 주로 경상소득
비정기적이고 반복되지 않는 소득은 비경상소득
(예) 주택임대소득, 개인사업소득 ⇒ 사업소득(경상소득)
경조소득, 퇴직금 및 연금일시금 등 ⇒ 비경상소득
- ※ '정기성'은 반드시 월 단위의 정기성을 의미하지 않음
(예) 매년 유사한 시기에 반복되는 연간소득 ⇒ 정기성이 있음

- 비경상소득에 포함되는 경우
 - 타가구로 부터 축의, 조의 표시로 애경사에 제공받은 현금 및 현물
 - 소득 중 퇴직금일시금 및 연금반환일시금 등
 - 카드 및 무료쿠폰 이용 등은 이용 시에 대상이 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시가로 계상한 할인 혜택
 - 복권, 경품권, 경마, 경륜 등의 당첨액 등 일시적 소득
- 비경상소득에 제외되는 경우
 - 매월 경상적으로 정산하는 퇴직금등 기타 ⇒ 급여에 해당
 - 개인연금 등의 사적연금 ⇒ 저축 찾은 금액으로 자산변동으로 인한 수입인 기타수입에 해당

(기입예시 7)

수입 및 지출의 품명과 용도	수 입		지 출		
	금 액	현물	금 액	신용카드.화상	선물
장녀 결혼 축의금 받음	20,000,00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본가로부터 자동차 구입비용 보조받음	5,000,00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처가로부터 전세자금보조받음	5,000,00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바) 예금 인출한 돈 등 기타수입이 있는 경우

- 기타수입에 포함되는 경우
 - 부동산이나 국공채, 주식 등에 투자해 두었던 것을 팔아 현금화한 경우
 - 일시적인 축재 목적으로 구입해 두었던 보석이나 양곡 등을 팔아서 현금화 한 경우
- 적금, 저축, 보험 등을 탄 경우 이자소득과 원금을 구분하여 기입
- 금융기관이나 다른 가구로부터 돈을 빌렸을 때 또는 빌려준 돈을 받았을 때에는 그 금액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 (기입예시 8참조)

(기입예시 8)

수입 및 지출의 품명과 용도	수 입		지 출		신용카드·와상	선물
	금 액	현물	금 액	현물		
빚려준 돈 받음	2,000,00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년 만기 공채 원금	7,000,00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수입이자 ”	1,300,00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언마 계탁 돈	5,000,00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딸 경흔준비로 저금 찾음	4,000,00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사) 상품권의 경우

- 상품권의 종류
 - 금액으로 표시된 상품권
 - 구체적인 용도가 지정된 상품권

● 가구에서 선물하는 상품권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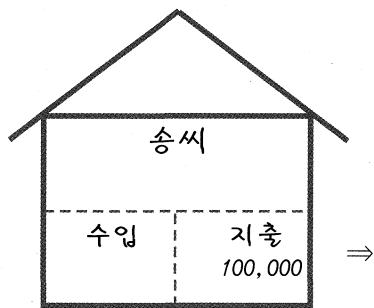
- 상품권의 종류와 관계없이 상품권을 받거나 준 경우는 현금으로 처리
 - 상품권을 준 가구 : 지출 중 용도가 정해져있지 않으면 교제비에 분류하고 용도가 정해진 경우 경조비 등으로 분류
 - 상품권을 받은 가구 : 가구간 이전 소득으로 분류
- ※ 단, 상품권을 구입하여 타 가구에 준 경우는 현금의 이전이고 상품과 서비스를 이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물에 표시하지 않음

(기입예시 9)

11월 2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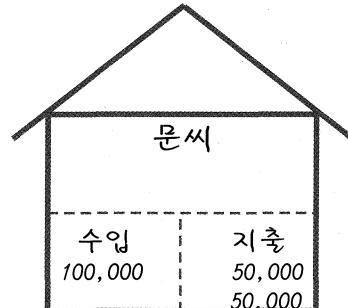
수입 및 지출의 품명과 용도	수 입		지 출		신용카드·와상	선물
	금 액	현물	금 액	현물		
상품권으로 청소기 구입 (청소기에 해당하는 지출 부호)		<input type="checkbox"/>	200,00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동생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선물함		<input type="checkbox"/>	100,00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사례1.
송씨가 상품권 10만원 구입하여 ⇒
문씨네 상품권 10만원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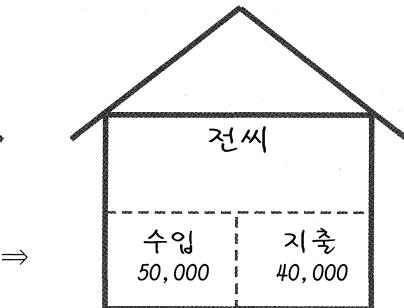
지출 100,000은 교제비

사례2.
문씨가 받은 상품권 5만원으로 옷
구입 후 남은 상품권 5만원 전씨네
선물



수입 100,000은 가구간이전
지출 50,000은 옷 구입
지출 50,000은 교제비

사례3.
전씨가 받은 상품권 4만원 김치 구입 후
만원 잔돈을 현금으로 받음



수입 50,000은 가구간이전
지출 40,000은 김치 구입
남은 10,000은 추후 지출시 기입

◎ 가구에서 사용하는 상품권의 경우

- 가구에서 사용할 전화카드를 구입 : 전화카드를 10,000원에 구입한 경우 지출란에 10,000원을 기입(기입예시 10 참조)
- ※ 매 통화 시 사용 금액이 감소하나 이 경우마다 따로 통화료로 기재하지 않고 처음의 현금지출 10,000원으로 기입 완료함
-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 : 상품권 구입 시 현금지출로 기입하지 않고 상품권으로 상품을 구입할 때 지출항목별로 기재

(기입예시 10)

11월 20일

수입 및 지출의 품명과 용도	수 입		지 출		신용카드.외상	선물
	금 액	현물	금 액	현물		
전화카드 구입 (0)			10,00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전화카드로 통화 (X)			-1,00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백화점 상품권 구입 (X)			200,00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상품권으로 땃 코트 구입(0)			100,00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아) 카드 포인트나 적립금의 경우

- 카드포인트 또는 적립금
 - 선포인트로 자동차, 컴퓨터 등을 구입한 경우
 - 누적해 두었던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 10회 이용시 1회무료와 같은 일정횟수 구입시 무료제공의 경우
 - 일정액 구입에 따라 상품권 등을 지급받는 경우

※ 단순히 제휴신용카드 등을 제시함으로 상품할인 혜택을 받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음

- 카드 포인트나 적립금을 사용할 경우 기입방법
 - 무료제공의 경우 : 시가로 평가하여 할인혜택으로 처리
 - 할인 받는 경우 : 할인받은 금액만큼을 할인혜택으로 처리
 - 지출 : 할인 받기 전 총액으로 기입

(기입예시 11)

수입 및 지출의 품명과 용도	수 입		지 출		
	금 액	현물	금 액	신용카드.외상	선물
커피(무료) (할인혜택부호)	3,50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커피		<input type="checkbox"/>	3,50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사과할인금액 (할인혜택부호)	20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사과		<input type="checkbox"/>	1,00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현금지출의 경우

가) 일반적인 기입방법

- 『수입의 종류 및 지출의 품명과 용도』란에는 가계수지 항목분류표에 따라 품목을 구분
 - 구입한 물품은 누가 어디에 쓸 것인가 하는 구입용도를 분명하게 기입
 - 다른 가구에 교체성격으로 지출했는지 여부
 - 멀리 사는 가족에게 보내는 것인지 여부 등
- 월세, 전기료, 수도료, 도시가스요금, 수업료 등과 같이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것은 「1월분」, 「3/4분기분」, 「2학기분」과 같이 명시
- 회비와 적립금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알 수 있도록 「동창회비」, 「직장공제회비」, 「꽃꽂이 모임회비」 등으로 상세히 기입
- 여행이나 등산 등에 소요된 비용은 일괄하여 기입하지 말고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지출내역을 자세히 기입
 - 단, 단체관광여행으로 세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단체여행비」 항목에 일괄 기입하며 국내인지 국외인지를 구별
 - 교통비는 시외버스요금, 기차요금, 항공요금 등으로 구분하여 기입
 - 식사대는 집에서 준비한 것과 외부에서 사먹은 것을 구분
 - 음료수 대금, 음주 대금, 숙박요금, 입장료 등으로 항목 세분
- 최근에 개발된 신상품일 경우에 상품명을 쓰고 그 품목의 종류를 알기 쉽도록 그 물품의 종류나 용도를 함께 기입하여 가계수지 항목분류가 용이하도록 함
 - ex) - 개안(벌레 물린데 바르는 약)
 - 후디스 키드밀 초이스(어린이용 영양보충식품)

나) 수입과 지출 중 변경사항

- 사업소득
 - 주택 등 건물임대소득을 재산소득에서 분리하여 사업소득에 분류

- 재산소득

- 기존의 부동산임대소득 중 토지임대소득은 기타재산소득에 포함

- 주류 및 담배

- 가구에서 직접 소모하기 위해 구입한 기호품으로 주류와 담배를 함께 분류하나, 주점에서 판매하는 술은 음식·숙박에 분류

- 교육부문

- '학생' : 유치원, 초·중·고 재학생, 단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재수생과 대학재학 중 타 대학에 다시 입학하기 위해 준비하는 자도 포함(편입준비는 제외)
 - '정규교육' : 국·공·사립, 사이버대학 및 대안학교를 포함한 정규교육 기관으로부터의 교육
 - '학원 및 보습교육' : 학생 및 상급학교 진학예정자가 학교수업의 보충을 위한 사설교육기관으로부터의 교육
 - '성인학원교육' 및 '외국어학원' : 일반인이 외국어 회화능력 향상 및 토플, 토익, 텁스 등 특정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수강
 - '기타교육' : 국내외 교육연수를 포함하여 위에 포함되지 않는 교육

교육관련 사례

- 대학 졸업 후 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여 다시 다른 대학입학을 위해 학원을 다니며 공부하는 경우
 - 재학 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학원 및 보습교육에 분류
- 대학 재학 중 편입을 준비하려고 편입학원에 다니는 경우
 - 성인학원교육
- 대학 졸업 후 국외 대학이나 대학원의 유학준비를 하거나 국내 대학원 입학을 위해 학원 수강 시
 - 교육 내용에 따라 성인직업학원이나 외국어학원으로 분류
- 직장인이 유학을 목적으로 학원을 다니는 경우
 - 교육내용에 따라 성인직업학원이나 외국어학원으로 분류

○ 음식 · 숙박

- 기준에 식료품으로 분류되던 외식비와 교양오락으로 분류되던 숙박비를 하나의 분류로 구성하여 음식 · 숙박으로 분류
- 음식 : 여타의 가공을 거치지 않고 즉시 섭취할 수 있는 상태의 음식 서비스를 제공받은 데에 지불하는 비용을 포함
- 숙박 : 호텔, 모텔, 여관, 장 등의 숙박전문시설과 민박, 흄스테이 등 타 가구 등의 숙박시설제공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을 포함
- 숙박료(객실료)와 식사비가 분리되지 않는 경우 숙박료에 포함하여 조사

○ 기타소비지출

- 현행분류에서 소비지출로 분류되는 경조비, 회비 및 교제비, 귀금속 등은 소비지출에서 제외하여 비소비지출과 기타지출에 분류

※ 보험가입요령

-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은 만기시 수령액과 관련없이 보험상품의 보장 내용에 따라 주위험을 보장하는 것에 분류
- 만기 시 보험금을 받는 경우 개인연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는 '저축 및 보험 탄 금액'에 분류하고 개인연금을 정기적으로 받은 경우는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항목에 분류
- 보험 만기 전 사고로 인해 보험금을 받은 경우는 기타비경상소득에 분류

〈보험의 종류〉

생명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명보험, 질병보험· 사망보험
화재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이나 기타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
연금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연금보험· 교육보험
운송관련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보험· 해상보험· 항공보험· 운전자보험

3) 현물소득의 경우

○ 현물소득

- 근무처에서 상품을 받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 자가생산물이나 자가판매물을 소비한 경우
- 정부 및 비영리기관으로부터 사회적 현물이전이 있는 경우
- 빌려준 돈이나 임대료 대신 상품을 받은 경우

○ 현물소득 기입방법

- 『수입의 종류 및 지출의 품명과 용도』란에는 어떤 상품을 어떤 곳에서 무슨 명목으로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기입
- 금액은 시장가격(소비자가격)으로 평가하여 『수입』란에 기입하고 현물란에 ✓ 표시
- 현물 소득의 경우 소득으로 파악됨과 동시에 해당 물품의 지출로 처리되나 가구통합입력시에 자동으로 지출합계에 포함되므로 지출면에 따로 처리하지 않음

현물소득에 기입하지 않는 경우

○ 타 가구로부터 대가없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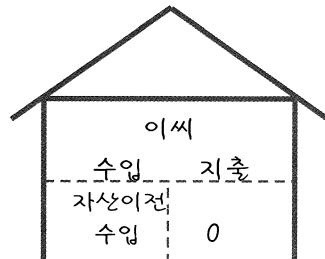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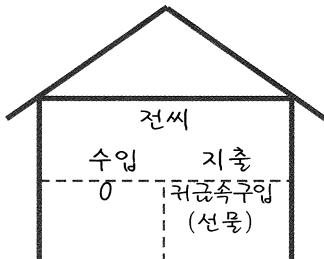
- 현물 소득으로 인식하지 않음
- 단, 지출의 경우, 조사대상가구에서 타가구로 이전이 확정된 상태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지출한 경우는 선물로 구별하여 인식

○ 가구 간 이전되는 현물이 자산의 이전인 경우

- 상속으로 집을 물려받은 경우나 귀금속, 골동품 등을 선물 받은 경우

사례1.

전씨가 이씨에게 돌반지 선물한 경우



- 전씨의 경우 지출에 귀금속 구입을 쓰고 선물에 체크
- 이씨의 경우 수입은 현물에 체크하지 않고 자산이전수입 항목으로만 분류

가) 근무처에서 상품을 받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 근무처에서 직원들에게 상여금으로 세탁기를 지급한 경우

- 『품명과 용도』란에는 「회사에서 가구주 상여금으로 세탁기 받음」이라고 기입
- 『수입』란에는 해당 세탁기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을 기입하고 현물표시란에 ✓ 표시(기입예시 12 참조)
- 부호를 기입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과 서비스의 지출부호와 근로소득 부호를 각각 기입

(기입예시 12)

수입 및 지출의 품명과 용도	수 입		지 출		신용카드·와상	선물
	금 액	현물	금 액			
회사에서 가구주 상여금으로 세탁기 받음	520,0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근무처에서 임금이외의 점심, 통근버스, 승용차, 주유금액 등 받을 때

- 『품명과 용도』란에는 그 대상을 한 종류씩 구체적으로 기입
- 『수입』란에는 1개월간 받은 혜택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액수를 기입하고 현물표시란에 ✓ 표시

● 제복이나 사무복을 받은 경우

- 제복이나 사무복 같이 회사에서 근무할 때만 입는 근무복을 받았을 때는 용도가 영업상 사용이므로 가계부에 기입하지 않음

● 직원복지후생시설이용의 경우

- 회사에서 무료식사나 무료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가구에서는 소득으로 인식하여 처리(기입예시 13 참조)

(기입예시 13)

수입 및 지출의 품명과 용도	수 입		지 출		신용카드·와상	선물
	금 액	현물	금 액			
가구주 회사에서 전시제공 받음	75,0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가구주 회사 구내이용소에서 무료이용	20,0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현물소득의 종류

○ 산업활동으로부터 소득(9종)

- 근로소득
 - 가구주
 - 배우자
 - 기타가구원

- 사업소득
 - 가구주
 - 배우자
 - 기타가구원
 - 주택 등 임대소득

- 재산소득
 - 이자소득
 - 기타재산소득

※ 산업활동으로부터 근로소득은 급여대신 지급될 수 있으나 현물의 제공은 통합적으로 상여금으로 분류

○ 정부 및 비영리단체로부터 이전(2종)

- 이전수입
 - 사회적 현물이전
 - 기타이전수입

○ 기타수입(3종)

- 기타수입
 - 퇴직금 및 연금일시금
 - 기타비경상소득
 - 기타자산변동으로 인한 수입

나) 자가 생산 또는 판매하는 상품을 소비하는 경우

● 가구에서 경영하는 음식점, 슈퍼 등에서 판매할 상품을 자가 소비한 경우

- 『품명과 용도』란에는 나간 상품의 품명을 기입하고 팔호 안에 자가가 생산한 상품일 때는 (자가생산물), 자가가 파는 상품일 때는 (자가매물)로 구분하여 품명 뒤에 기입
- 자가에서 생산한 쌀을 소비로 인식하는 시점은 수확했을 때가 아니고 정미한 시기에 기입
- 계란이나 야채 등의 자가생산물을 가계용으로 매일 소비하고 있는 경우는 그때마다 기입하지 않고 1개월분을 한꺼번에 기입 가능
- 『수입』란에는 해당 상품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을 기입하고 현물 표시란에 표시(기입예시 14 참조)
- 부호를 기입할 경우에는 해당물품이나 서비스의 지출부호와 사업소득 부호를 각각 기입

(기입예시 14)

수입 및 지출의 품명과 용도	수 입		지 출		
	금 액	현물	금 액	신용카드·와상	선물
어머니가 집 옆 컴퓨터에서 파 (자가 생산물) 수확	2,5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2,50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가구주 가게에서 (자가매물) 음료수	1,0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1,00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가구주 가게에서 (자가매물) 우유 1개월분	10,0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10,00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다) 정부 및 비영리기관으로부터 사회적 현물을 받은 경우

◎ 결식아동이나 저소득 노인을 위한 도시락배달 등의 경우

- 『품명과 용도』란에는 「도시락제공」이라고 기입
- 『수입』란에는 해당 도시락가격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을 기입하고 현물표시란에 표시(기입예시 15참조)
- 부호 입력은 음식숙박의 부호와 이전수입 중 사회적 현물수입의 부호를 입력

(기입예시 15)

수입 및 지출의 품명과 용도	수 입		지 출		신용카드·와상	선물
	금 액	현물	금 액	현물		
도시락 제공 받음	3,0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라) 빌려준 돈이나 임대료 대신으로 상품을 받을 경우

◎ 부동산(토지, 주택 등)을 임대해 주고 받은 보증금

- 현물로 받았을 때 현물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금액에 표시하고 현물표시란에 표시(기입예시 16 참조)
- 부호를 입력할 시에는 해당품목의 지출부호와 기타수입 중 기타자산변동으로 인한 수입의 부호를 각각 입력

(기입예시 16)

수입 및 지출의 품명과 용도	수 입		지 출		신용카드·와상	선물
	금 액	현물	금 액	현물		
주택 임대료로 현금대신 쌀 5kg과 빨음	920,0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신용카드나 외상지출의 경우

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 시

- 상품을 구입할 때에 그 대금을 즉시 현금이나 수표로 지불하지 않고 신용 카드나 외상으로 구입한 경우
 - 상품을 가구에서 인도 받았을 때 기입
- 『품명과 용도』란에는 「과일 외상」, 「가구주 겨울양복 신용카드로 6개월 월부」 등과 같이 품명, 구입방법, 지불방법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기입
- 품 명 : 곡물, 생육, 채소, 과일, 유지, 조미료 등과 같이 가계수지 항목 분류표를 참조하여 구분
- 지불방법 : 월부구입에 대해서는 몇 회 분할인지 기입
- 우유, 유산균음료, 신문대금 또는 드라이 크리닝 대금 등을 월 단위로 지불할 경우는 매일 외상이라고 기입하지 말고 그 대금을 지불할 때 일괄하여 기입
- 상품대금의 일부는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구입하였을 때는 두 줄을 사용하여 첫번째 줄에는 현금으로 지불한 금액을 금액란에 기입하고 두번째 줄에는 차액을 신용카드·외상란에 기입하고 『신용카드·외상란』에 √ 표시

(기입예시 17)

수입 및 지출의 품명과 용도	수 입		지 출		
	금 액	현물	금 액	신용카드·외상	선물
카메라 구입시 계약금		<input type="checkbox"/>	100,00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잔금 할부(6개월)		<input type="checkbox"/>	120,0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신문 구독료(1개월)		<input type="checkbox"/>	12,00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사과 외상구입		<input type="checkbox"/>	20,0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보온병 신용카드구입		<input type="checkbox"/>	24,0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나) 신용카드 청구액이나 외상값을 갚은 경우

- 『품명과 용도』란에는 「과일 외상값 갚음」 「가구주 겨울양복 1회분 갚음」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입
- 『지출』란에 신용카드·외상값으로 지불한 금액을 기입하고 이 경우에는 신용카드·외상값에 아무 표시도 하지 않음
- 부호를 기입할 때에는 해당 품목의 지출부호를 기입하지 않고, 어떤 물품의 대금인가에 관계없이 모두 부채를 갚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월부 및 외상 상환」의 부호로 처리

(기입예시 18)

수입 및 지출의 품명과 용도	수 입		지 출		신용카드·외상	선물
	금 액	현물	금 액	현물		
과일 외상값 갚음		<input type="checkbox"/>	20,00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가구주 겨울코트 3회분 월부 갚음		<input type="checkbox"/>	60,00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카메라 1회분 월부 갚음		<input type="checkbox"/>	20,00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선물의 경우

- 선물에 기입하는 경우
 - 조사대상가구에서 ①타가구로 ②이전이 확정된 상태에서 ③상품 및 서비스를 지출한 경우
 - ① 타가구인 경우
 - 비영리단체 등에 기부한 경우는 선물에 해당되지 않음
 - ② 이전이 확정된 경우
 - 지출용도가 확정되어 금액이 명확한 경우(선물분류 예시를 참조)
 - ③ 상품 및 서비스의 경우
 - 가구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상품을 구입한 경우에 상품의 전부나 일부를 무상으로 다른 가구에 준 경우
 - 가구에서 경영하는 채소가게, 과일가게, 슈퍼 등에서 판매할 상품을 다른 가구에게 무상으로 준 경우
 - 서비스를 별도로 인식가능하고 지출용도가 확정되어 금액이 명확한 경우
 - 타가구로 이전 지출한 현금은 제외
- 선물의 기입방법
 - 『품명과 용도』란에는 해당 품명을 기입
 - 『지출』란에는 상품이나 서비스이용료의 경우 해당 가격을 표시하고 선물표시란에 표시
- ※ 단, 그 달에 현물소득이 즉시 소비지출 된 것으로 기입한 후 다음 달에 현물이 선물로 지출될 경우는 새로 기입하지 않고 전달 것도 수정하지 않음
- 대상가구에서 쌀10kg을 구입하여 5kg을 선물한 경우
 - 쌀을 제공한 가구는 쌀5kg을 소비한 것으로 처리
 - 아래 줄에 나머지 쌀5kg은 이웃집 선물 용도라고 기입하고 선물 표시란에 표시
 - 제공받은 가구의 경우는 소득과 소비로 고려하지 않음

● 대상가구에서 쌀10kg을 구입하여 10kg을 선물한 경우

- 쌀을 제공한 가구는 쌀10kg을 소비한 것으로 처리
- 소비한 것과 동시에 선물 표시란에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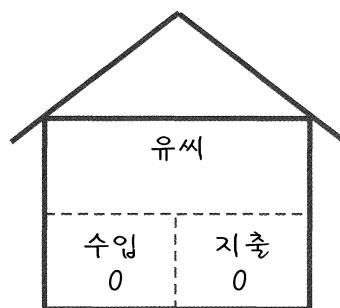
● 가구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상품을 선물한 경우

- 가게를 운영하는 가구에서 친척 병문안 등의 사유로 타 가구에 상품을 선물할 경우
- 금액은 상품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기입
- 수입은 현물 표시란에 표시하고 지출은 선물 표시란에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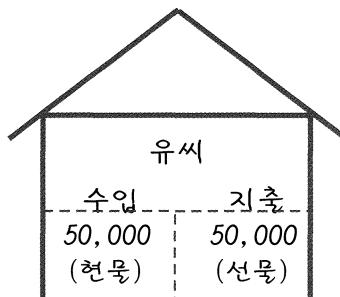
(기입예시 19)

수입 및 지출의 품명과 용도	수 입		지 출		신용카드·와상	선물
	금 액	현물	금 액	현물		
쌀을 10kg 구입하여 쌀5kg을 선물 (우리 집은 쌀5kg만 지출로 처리)		<input type="checkbox"/>	19,00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쌀5kg 이웃집 선물		<input type="checkbox"/>	19,000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쌀 10kg을 구입 후 따로 사는 떡 에게 전부선물		<input type="checkbox"/>	38,00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친척 병문안 쥬스선물 (자가매물) 쥬스	5,2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례1.
다른 곳에 사는 어머니가
김장 후 김치를 유씨네 선물
수입과 지출 모두 파악하지 않음



사례2.
유씨(가구주)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포장김치 5만원어치 김씨네 선물
수입 : 가구주 사업소득으로 현물체크
지출 : 김치로 분류하고 선물체크



선물 분류 예시

- 같이 살지 않는 아들이나 조카에게 중학교 등록금을 내 준 경우
 - 계좌이체로 직접 중학교에 납입한 경우 : 선물에 표시하고 해당 가구의 교육비 지출로 분류
 - 조카에게 현금으로 준 경우 : 선물이 아니며 지출은 국내학생가구에 대한 송금으로 분류 (실제 조카가 중학교 등록금을 납입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음)
- 같이 살지 않는 어머니의 파마 서비스이용료를 지불한 경우
 - 어머니와 미용실에 가서 파마를 하고 이용료를 지불한 경우 : 선물에 표시하고 이미용료 지출로 분류
 - 어머니에게 파마를 하라고 돈을 준 경우 : 선물이 아니며 교제비 지출로 분류
- 친구에게 핸드폰을 준 경우
 - 내가 핸드폰을 직접 구입하여 친구에게 준 경우 : 선물에 표시하며 이동전화 기기 지출로 분류
 - 친구에게 핸드폰을 사라고 돈으로 준 경우 : 선물이 아니며 교제비 지출로 분류
- 타가구가 아닌 비영리단체에 상품을 준 경우 :
 - 선물로 처리하지 않고 가구의 현금이나 신용카드 및 외상의 해당항목의 최종소비지출로 처리

6) 사글세 보증금을 지불한 경우

● 세든 가구

- 지출의 『품명과 용도』란에 보증금과 월세를 구분하여 기입
- 사글세의 경우, 첫 번째 달에는 (기입예시 20) 같이 기입하여야 하나 두 번째 달부터는 매월 공제하는 금액만큼 「빌려준 돈 받은 금액」으로 기입한 후 다시 「월세 지불」로 기입

(기입예시 20) 세든 가구의 경우

(세든 가구의 경우)

8월 10일 (첫 달) : 사글세보증금 10개월에 3,000,000원 (월세환산금액 300,000원)

수입 및 지출의 품명과 용도	수 입		지 출		
	금 액	현물	금 액	신용카드·의상	선물
사글세 보증금		<input type="checkbox"/>	2,700,00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월분 월세 지불		<input type="checkbox"/>	300,00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9월 10일 (다음달부터)

수입 및 지출의 품명과 용도	수 입		지 출		
	금 액	현물	금 액	신용카드·의상	선물
사글세로 빌려준 돈 받음	300,00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9월분 월세 지불		<input type="checkbox"/>	300,00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주인가구

- 보증금을 받았을 경우 「빌린 돈」에 분류하며, 사글세의 경우 두 번째 달부터는 「빌린 돈 갚은 금액」과 「월세 수입」으로 기입
- 보증금으로 지불한 돈은 「빌려준 돈」으로 분류
- 보증금을 준 가구가 다시 되돌려 받았을 경우에도 역시 「빌려준 돈 받은 금액」으로 기입

(주인가구의 경우)

8월 10일 (첫 달)

수입 및 지출의 품명과 용도	수 입		지 출		신용카드·외상 선물
	금 액	현물	금 액	현물	
사금세 보증금 받음	2,700,00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월분 월세 받음	300,00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9월 10일 (다음달부터)

수입 및 지출의 품명과 용도	수 입		지 출		신용카드·외상 선물
	금 액	현물	금 액	현물	
사금세로 빼낸 돈 갚음		<input type="checkbox"/>	300,00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월분 월세 받음	300,00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05 조사대상가구에 드리는 글(조사직원기입)

조사대상가구에 평소와 다른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을 경우와 가계수지 내용에 대한 특별한 설명을 요하는 일이 있을 때는 담당공무원이 그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기입하여 사회복지통계과에서 가계부 내용을 검토할 때 도움을 받고자 하는 항목임

06 조사대상가구에서 주시는 글(응답자기입)

가계부를 기입하는 가구에서 가계동향조사 내용에 대한 의문이 있거나 건의 사항이 있을 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면 이를 수렴하여 참고하거나 시정하기 위한 항목

part

05

조사표류 내용검토 요령

1. 일반적인 사항

2. 가계부



01 일반적인 사항

- 회수된 가계부는 가계동향조사 대상 적격가구인가? 혹시 부적격 가구를 조사한 것이 있는가?
- 조사대상가구 중 부주의로 조사를 누락한 가구는 있는가?

02 가계부

가. 앞표지

- 조사년월이 가계부를 기입한 조사대상년월과 일치하는가?
 - 혹시 가계부를 배부하는 달(전월)이나 회수하는 달(익월)을 기입하지는 않았는가?
- 조사구번호, 구역 및 거처번호, 가구번호는 가구명부(가계동향조사용)의 부호와 일치하는가?

나. 가구실태란

< 가구원에 관한 사항 >

- 가구주와 관계 순을 기준으로 가구주부터 기입되었는가?
- 모든 가구원의 성별이 가구명부와 일치하는가?
- 생년월일은 양력을 기준으로 바르게 환산 되었는지?
- 교육정도는 상향조사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히 조사되었는가?
- 조사대상기간동안 가구원이 직장을 옮긴 적은 있는가?
- 산업과 직업은 정확히 분류되었는가?

- 조사 대상 기간 동안 가구주 및 배우자가 근무처에서 하는 일이나 종사상의 지위의 변동은 없는가?
- 배우자가 비동거임에도 기입한 사례는 없는가?
- 가구주와 관계, 취학 및 취업상태는 정확한가?
- 조사대상기간 중에 가구원수의 변동은 없었는가를 가계부를 회수할 때 조사 대상가구에 확인하였는가?
- 조사대상기간 중에 가구원 중에서 취업상태가 변동된 취업자는 없는지, 무급 가족종사자는 포함하였는지를 가계부 회수시 조사대상가구에 확인하였는가?

< 따로 살고 있는 배우자와 미혼자녀 >

- 배우자유무에서 비동거로 기재된 배우자의 누락은 없는가?
- 학업이나 취업 등을 이유로 타지에 나가 있는 미혼자녀가 누락되지 않았는가?

< 무직가구의 주된 소득원 >

- 가구주가 무직인 가구는 『무직가구의 주된 소득원』란이 조사되어야 하고, 가구실태란의 『취업여부』가 비취업인가?
- 『수입 및 지출』란에 기입된 소득내용과 『무직가구의 주된 소득원』란에 표시된 항목과 일치하는가?

< 사용면적(전용)>

- 사용면적은 전용면적으로 기입하였는가?

< 자동차 보유 >

- 자가용 보유시 지출사항의 자동차관련 유지비의 누락은 없는가?

< 주거에 관한 사항 >

- 조사대상기간 중에 전세에서 월세로 점유형태가 바뀌거나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이 변동된 가구는 없는가?

- 점유형태가 『유상사택』, 『보증부 월세』, 『사글세』, 『월세』인 경우에 월세는 기입되었으며, 『수입 및 지출』란에 기입된 월세지불금액과 동일한가?
- 점유형태가 『사택』, 『전세』, 『보증부 월세』, 『사글세』인 경우에 전세금이나 보증금이 임대계약 개신으로 변동된 가구는 없는가?
- 점유형태가 자가인 경우 주택가격과 점유율은 정확한가?
- 자가 주택소유에서 미입주 분양주택이나 타 지역 주택소유자도 소유에 포함하였는가?

< 거처구분 >

-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을 구별하여 기입하였는가?
- 다가구주택과 다세대 주택을 혼동하지 않았는가?

다. 수입 및 지출란

< 은행자동이체 항목 >

- 급여, 연금, 정기예금이자 등 은행구좌에 자동입금되는 것 중 누락사항은 없는가? 혹은 은행구좌에 입금되는 날짜의 『수입 및 지출』페이지에 이중으로 기입되지는 않았는가?
- 통합공과금, 신용카드 대금 등 은행구좌에서 자동 지불되는 것 중 누락사항은 없는가? 혹은 이중으로 기입되지는 않았는가?
- 근로자의 급여인 경우 각종 조세공과금이 원천징수 되기 전의 총 소득액과 공제된 소득세, 방위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연금대부 같은 금액 및 기타 각종 공과금 등의 내역이 빠짐없이 기입되었는가?
- 사업소득의 경우 영업상 구입한 재료비나 종업원의 식비 등 사업비용을 가계 지출에 포함시키지 않았는가?

< 일일가계수지 >

- 가구실태 중 『근로자가구』인 경우는 가구주의 근로소득이, 『고용주나 단독 자영자가구』인 경우는 사업소득이 누락되지 않았는가?

- 소득은 가구원 중 누구의 어떤 종류의 것인가를 알 수 있게 기입하였는가?
또한, 가구실태란의 취업여부, 종사상의 지위와 소득관계가 부합되는가?
- 가구실태란의 주거에 관한 사항 중 『보증부 월세』나 『월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월 임차료로 지불한 금액이 기입되었는가?
- 사글세인 경우에도 임차료를 월별로 분할하여 월세에 기입하였는가?
- 『수입종류 및 지출의 품명과 용도』란에 품목명을 생선이나 과일 등과 같이 포괄적으로 기입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품목을 한 줄에 통합하여 기재한 것은 없는가?
-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지출하는 공과금, 교육관련 비용, 세금, 생필품 구입대금 등의 누락은 없는가?

<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지출품목 예시 >

구 분	내 용
공 과 금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도시가스 사용료, TV 수신료, 전화요금, 건강보험료, 인터넷전용선이용료 등
교 육 비	유치원비, 각종학원비, 학교운영지원비, 등록금, 개인과외비 등
세 금	재산세(주거용 건물분), 주민세, 소득세 등
생필품구입대금	쌀, 연탄, 석유, 프로판 가스 등
저 축 성 지 출	적금이나 계 블입금, 국민연금, 퇴직기여금 등
기 타	각종 모임회비, 송금 및 보조 금액, 월세, 이자, 신문구독료, APT관리비 등

- 신용카드나 외상으로 상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금액은 지출란 중 『신용카드·외상』란에 나누어 기입하였는가?
- 신용카드나 외상값을 갚은 경우에는 금액은 지출란 중 『현금』란에 기입하였는가?

part

06

부 록

1. 통계법 (발췌)
2. 가계동향조사가 언급된 법령

1 통계법(발췌) - 2007년 7월 23일 공포 -

가. 조사응답 의무와 조사원의 조사원증 소지 및 제시 의무

제26조 (실지조사) ①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을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관계인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②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에 있어 제1항에 따른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질문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직무를 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2조 (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 통계응답자는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질문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신뢰성 있는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조사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하여야 한다.

나. 비밀의 보호 및 통계목적 이외 사용금지

제33조 (비밀의 보호) ①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4조 (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 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벌칙

제3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제31조제2항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제31조제2항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자
-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의 작성 또는 보급을 위하여 수집·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조사표 등 기초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또는 말소하거나 통계 자료를 고의적으로 조작한 자. 다만, 통계작성기관 내부에서 내용검토 절차 또는 통계작성기법에 따라 조사오류 또는 입력오류 등을 수정 또는 변경한 자를 제외한다.

제40조 (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1조 (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응답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응답을 한 자
- 제30조제3항 또는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통계자료(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다)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 제34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항(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다)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라. 과태료 부과 기준(통계법시행령 제53조제3항 관련)

위반사항	해당 법규정	위반횟수별 과태료		
		1회	2회	3회이상
법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제외한다)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법 제41조 제3항 제1호	50	80	100
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법 제41조 제3항 제2호	50 (5)	80 (10)	100 (20)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응답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응답을 한자	법 제41조 제3항 제3호	50 (5)	80 (10)	100 (20)
법 제30조제3항 또는 법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통계자료(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제외한다)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법 제41조 제3항 제4호	50	80	100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항(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법 제41조 제3항 제5호	50	80	100

* 괄호 안은 자료수집의 대상이 개인이나 가구인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임

2 가계동향조사가 언급된 법령

● 공의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4.18 국토 해양부령 제7호]

제47조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 ⑤제46조제3항 전단은 이 조에 따른 영업이익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영업으로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이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의 휴업기간 동안의 가계지출비(휴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개 월분의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계지출비를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으로 본다. <개정 2007.4.12, 2008.4.18>

제52조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허가등을 받아야 행할 수 있는 영업을 허가등이 없이 행하여 온 자가 공의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45조제1호 본문에 따른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제45조제2호에 불구하고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되,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영업시설등의 이전비용"이라 한다)은 별도로 보상한다. 다만,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안의 직계존속·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공의사업으로 다른 영업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시설등의 이전비용만을 보상하여야 한다.<개정 2008.4.18>

제54조 (주거이전비의 보상)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는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2인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서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1인당 평균비용을 뺀 금액으로 하고, 가구원수가 6인인 경우에는 6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적용하며,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6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6인을 초과하는 가구원수에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1인당 평균비용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5.2.5, 2007.4.12, 2008.4.18>

1인당 평균비용 = (6인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2인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div 4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08.7.2 국토해양부령 제32호]

제32조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선정에 관한 특례) ①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이하 "국민임대주택"이라 한다) 중 5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단독세대주는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한한다)은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4인

가구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7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공급하되,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2.9.3, 2004.1.14, 2004.10.22, 2005.3.9, 2005.11.17, 2006.8.18, 2008.6.20, 2008.7.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3.28 법률 제9079호]

제12조 (보상금) ④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告示)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全國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3.28 법률 제9080호]

제19조 (교육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정 통계 중 가계조사 통계의 전국가구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정도에 미치지 못하고 그 자녀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녀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감면하거나 보조 할 수 있다.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7.10.23 대통령령 제20331호]

제15조 (취업보호 기준 등) 2. 제17조에 따라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하는 날 현재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였으나 가계 월평균 소득이 「통계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정 통계에 따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3.28 법률 제9083호]

제12조 (보상금) ⑥보상금의 지급 수준은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 가구(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7.10.31 대통령령 제20354호]

제12조의2 (생활지원금) 1. 생활지원금 신청 전년도의 연간 가구당 소득이 「통계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의한 전년도 가계조사의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비의 연간 합계액을 초과한 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8조 (보상금) ②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위에 대한 희생과 부상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4.3 대통령령 제20763호]

제40조 (휴업 보상금의 지급 기준)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휴업 보상금은 통계청이 매년 조사·공표하는 도시가계비와 농가가계비를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계산(日割計算)한 금액에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지급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5.16 대통령령 제20051호]

제17조의3 (휴업보상금의 지급) ①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휴업보상금의 지급액은 통계청이 매년 조사·공표하는 도시가계비와 농가가계비를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할계산한 금액에 가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지급기간은 2년이내로 한다. <개정 1994.12.23, 1999.6.30, 2002.12.31, 2005.4.27>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727호]

제7조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에 대한 교육지원<개정 2004.3.17>) 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이하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통계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의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개정 2004.3.17, 2005.7.27, 2007.10.23>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7.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48호]

제14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①법 제32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 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기초수급권자"라 한다)로서 65세 이상의 자
 - 나.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 다.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전년도(본인 등에 대한 소득조사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를 말한다)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하인 자로서 65세 이상의 자(이하 "실비 보호대상자"라 한다)
 - 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 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2. 노인복지주택 :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제1항제1호 라목 및 제2호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8]